

www.moel.go.kr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 질의회시집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998. 7 - 2018. 3



현장에서 인사·노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생기면 해당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참고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질의회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축적된 질의회시를 분류·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금번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률에 대하여 통합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 질의회시집은 일선의 인사·노무 담당자, 근로자, 근로감독관 등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노동관계법 질의회시집은 각 법률별 1~3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발간함에 따라 각 법률 조항에 대한 질의회시를 여러 권의 질의회시집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의회시집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그간에 발간된 질의회시집과 최근 질의회시들을 묶어서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법률마다 지난 10~20여 년간의 질의회시들을 한권으로 통합하여 단권화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률 질의회시집이 노동 현장에서 정확한 나침판 역할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에 기여하고,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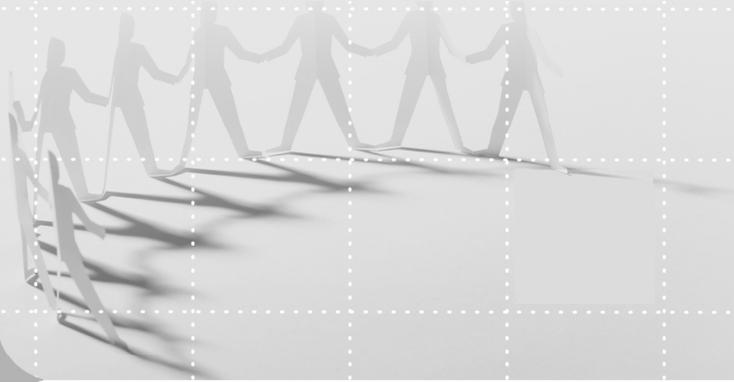
노동정책실장

* 일러두기

- 동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998.7월부터 2018.3월까지의 주요 질의회시를 모아 통합, 발간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질의회시 등은 동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책자에 수록된 질의회시 중 당시 행정해석 이후 법률개정 등으로 현재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제1장 총 칙	1
▶ 출판사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3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채권보장기금 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5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을 경우 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6
▶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8
제2장 도 산	11
1. 사실상 도산	13
▶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13
▶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	14
▶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15
▶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	16
▶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17
▶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18
▶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19
▶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20
▶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22
▶ 일정시점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경우 사업계속기간 산정방법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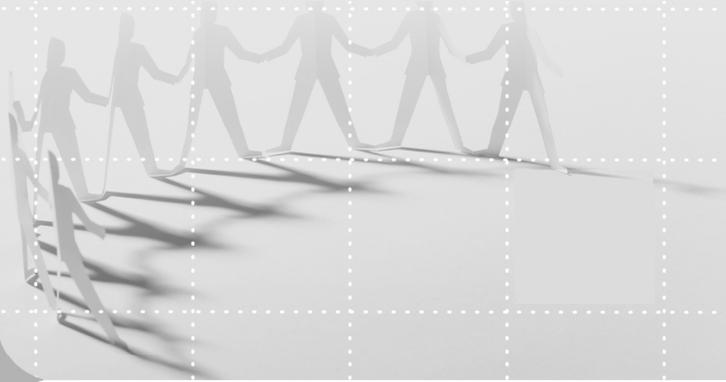


차 례

- ▶ 동일인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임금지급 능력의 판단 … 24
- ▶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여부 …………… 26
- ▶ 사업계속기간의 기산일 …………… 28
- ▶ 대표이사과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사업주인지 여부 …………… 30
- ▶ 체당금 신청 시 소속 회사(사업주) 판단 방법 …………… 32
- ▶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4
- ▶ 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 …………… 36
- ▶ 사업주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가능여부 …………… 38
- ▶ 사업주 사망(자살)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 39
- ▶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 41
-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43
- ▶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44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46
- ▶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 판단 방법 …………… 47
- ▶ 구두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 49
- ▶ 사업의 영업양도·양수 판단 방법 …………… 50

Contents

▶ 관계사간 전적이 이루어져 두 회사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51
▶ 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3
▶ 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4
▶ 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	56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57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	59
▶ 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60
▶ 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62
▶ 사업의 개시일	63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64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	65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판단	66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	67
▶ 둘 이상의 도산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산정 퇴직기준일 적용 및 제척기간에 관한 해석	68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	72
▶ 도산등사실인정 처리시 도산신청서 처리방법	73
▶ 사업재개 의사 표명시 사업폐지 검토	75
▶ 도산신청일 및 제척기간	76
▶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77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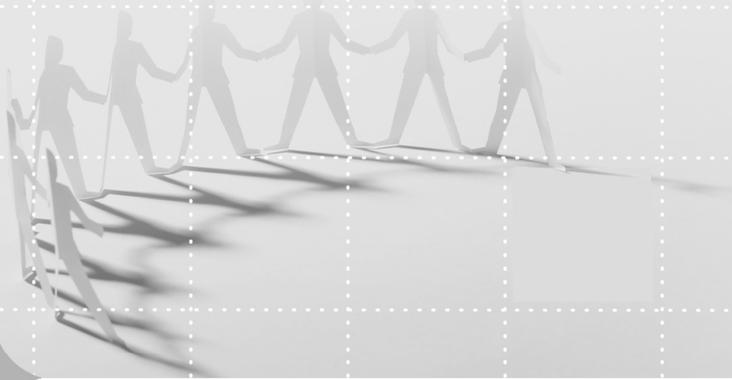


차 례

2. 재판상 도산 (회생절차 및 파산)	80
▶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파산법」 규정에 의거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은	80
▶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82
▶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83
▶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	84
▶ 체당금 지급관련	85
▶ 회생절차 폐지결정	86
▶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87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88
▶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89
▶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90
▶ 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91
▶ 위장폐업 관련	92
▶ 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93
▶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시 체당금 지급여부	94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95

Contents

▶ 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96
▶ 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	97
▶ 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	98
▶ 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	100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확인신청서 처리	101
▶ 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103
▶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 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105
▶ 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여부	107
▶ 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	108
▶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시 체당금 지급절차	110
제3장 체당금 사실확인	111
▶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13
▶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114
▶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115
▶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16
▶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17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118
▶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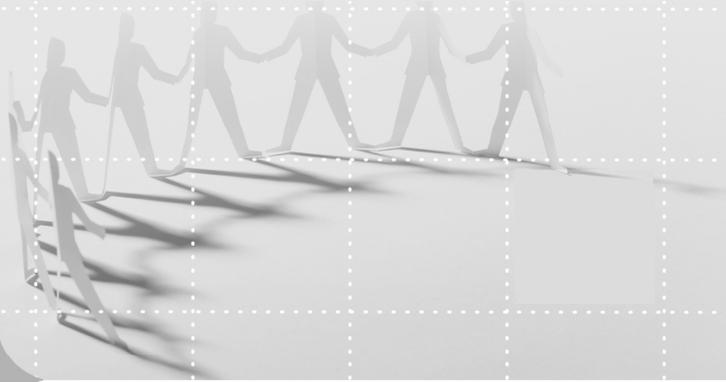


차 례

- ▶ 법원의 배당 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21
- ▶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22
- ▶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125
- ▶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그 산정방법 127
- ▶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128
- ▶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129
- ▶ 회사대표가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 여부 131
- ▶ 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체당금 지급여부 133
- ▶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
 또는 회수 해당여부 134
- ▶ 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 여부 136
- ▶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38
- ▶ 법원 조정당시 포기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0
- ▶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 상한액 계산방법 141
- ▶ 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 143
- ▶ 불법채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5
-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7

Contents

- ▶ 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148
- ▶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149
- ▶ 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 150
- ▶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151
- ▶ 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 152
- ▶ 체당금 조사시 반드시 대면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53
- ▶ 체당금 조사 방법 및 가불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 산정 154
- ▶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156
- ▶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157
- ▶ 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158
- ▶ 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 160
- ▶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63
- ▶ 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164
- ▶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행정해석 변경 시달) 165
- ▶ 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 167
- ▶ 출산휴가기간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168
- ▶ 퇴직연금 적립액 발생시 체당금 산정방법 169
- ▶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170
- ▶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 173
- ▶ 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방법 174
- ▶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업무 대리 범위 176
- ▶ 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 177



차 례

▶ 부당이득 환수방법	178
▶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180
▶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 사업장이 다른 경우	181
▶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182
▶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183
▶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184
▶ 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	185
▶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186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	188
▶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	189
제4장 소액체당금	191
▶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193
▶ 사업장 양도·양수 시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194
▶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중복 지급	195
▶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197
▶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198
▶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199
▶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200
▶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201
▶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202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203

Contents

제5장 부담금의 징수	209
▶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11
▶ 향만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향운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12
▶ 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213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 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215
▶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216
▶ 회사 결산일(9월말)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217
▶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징수여부	218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19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출판사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Q 질의

- 재판상 도산 이후 과외지도교사의 체당금 청구서가 접수 시 형사재판의 판결주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이 2심 법원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는 1·2심판결 주문의 내용이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어 기판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1·2심판결 취지 및 송치담당 감독관의 조사내용 등을 존중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권 행사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행정행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체당금 지급 대상임을 인정해야 함.

<을설> 송치 당시 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송치하였다 하더라도 대구 남부지원의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감독관이 기소한 근거만을 가지고 체당금을 지급 하였다가 형사사건이 패소하여 지급한 체당금을 환급하였던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6조(확정판결의 범위)에 의거 2심 판결 주문 내용만으로는 과외지도 교사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판력 또는 집행력을 구할 수 없기에 과외지도교사가 체당금 지급 청구시 지급대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구할 수 없어 부적격 처리가 타당함.

<질의사무소 의견> : 갑설

A 회시

- 귀 소 질의내용과 같이 설령 채당금을 청구한 과외지도교사들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하여 2심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실시된 내용만으로 실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들의 채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채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114, 2005.12.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채권보장기금 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질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여 공무원 특별분양·임대 사업을 해오고 있음.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에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공포 2005.5.31, 시행 2005.7.1)]으로 2005.7.1 이후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제외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A 회시

- 귀 질의상의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 규정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적용시만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특례규정으로 보여질 뿐, 「임금채권보장법」 적용까지도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적용제외 대상사업이 될 수는 없음.
-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의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발주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03, 2006.3.14.)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을 경우 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질의

- 근로자 A는 2000.1.15. ○○인포텍(주)에 입사하였고, ○○인포텍(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하여 2004년 8월 7일 퇴직하였음.
- 「임금채권보장법」 상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제척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즉, 2005년 8월 7일까지이나, 2005년 8월 7일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2005년 8월 8일까지이며, 근로자 A는 2005년 8월 8일 ○○지방노동청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06년 3월 3일 ○○인포텍(주)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음.
- 그리고 2006년 4월에 근로자 A 등 6인(이 중 5인의 퇴직일은 2004년 8월 7일임)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인포텍(주)의 도산등사실인정으로 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2004년 8월 8일(참고로 2004년 8월 8일은 공휴일인 일요일임)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2004.8.7.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 A등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불합리 하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귀하께서 질의한 ‘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지급대상근로자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기준】

(퇴직급여보장법-1963, 2006.6.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이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순연)된 경우에는 영 제7조 본문의 1년 전이 되는 날의 산정을 위한 퇴직기준일은 「민법」 제161조 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영 제5조제2항의 “1년 이내”의 말일로 한다.

※ 적용례

- 근로자가 2005.3.31. 퇴사하였고, 신청기간(1년)의 만료일인 2006.3.31.이 토요일이어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월요일인 2006.4.2.에 한 경우
 - 영 제7조 본문의 1년 전이 되는 날의 산정을 위한 퇴직기준일은 「민법」 제161조 규정에 의거 순연되기 전의 만료일인 2006.3.31.이 됨

(퇴직급여보장법-2008, 2006.6.13.)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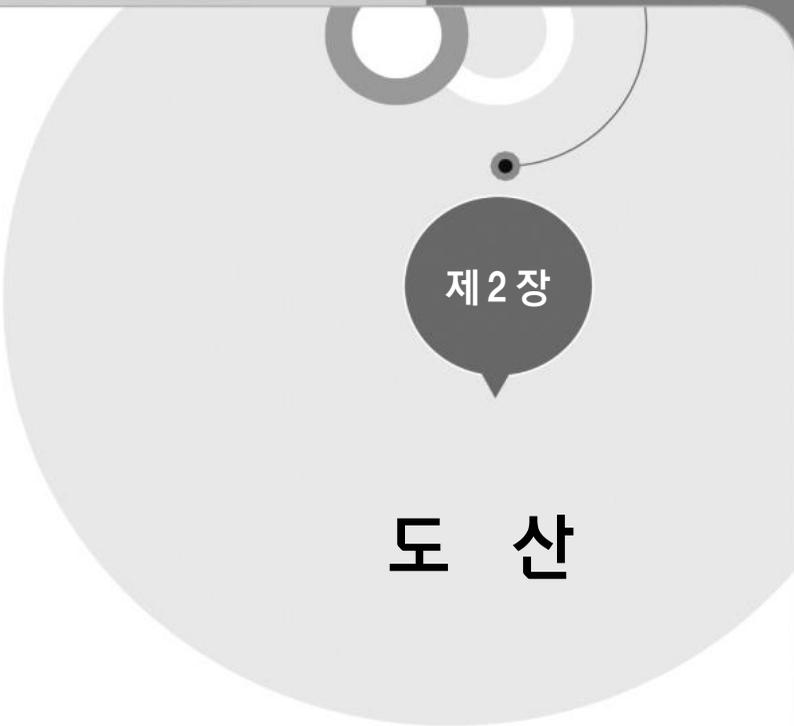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임. A법인의 영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B법인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법인 명의의 변경에 불과하고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만약 B법인이 2006.6.15.자로 도산사유(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B법인이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2005.6.1.)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년도(200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 법인 명의변경 또는 영업양도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신설된 법인이 상시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지 여부

A 회시

- 양도회사의 영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양도회사의 물적·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회사에 이전하였다면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양수회사가 2006.6.15.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호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양수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2005.6.1.)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2005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양도회사의 모든 채권과 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를 동일 사업주로 보아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법-2460, 2006.7.11.)



제 2 장

도 산

제 2 장 도 산

1. 사실상 도산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Q 질의

- 기존 법인에서 신설분리 독립한 법인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설립일: 분리 전 법인 1994.8.30., 신설법인 1997.10.7.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1998.7.22.
 - 상시근로자수: 25명(이 중 분리 전 법인에서 진출된 근로자수는 12명이며, 이들의 근속기간은 분리 전 법인 입사일자를 기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사업주의 요건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마련된 것임.
-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해설: 위 내용 중 “사업주 요건 1년 이상”은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임금 68207-546, 1998.8.26.)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

Q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제6조제2항 단서에는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만일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A 회시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규정된 퇴직증명서, 미지급임금 등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일단 접수함.
- 위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지에 출장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사실판단을 행하되, 사실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 등 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783, 1998.11.20.)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

Q 질의

- A사는 자동차관련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9.1.12.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계속 사업을 운영하던 중 2.13. 사업주가 행방불명됨에 따라 2.14. 부터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임금을 충당하다가 1999.3.31. 사업을 중단함.
- 1999.1.12. 부도 발생 시 사업주는 1999.1.20.자로 폐업하겠다는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1999.3.31. 사실상 폐업되기까지 근로자들에게 폐업신고서 제출여부나 폐업의사 등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시점은

A 회시

-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
- 생산관리라 함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의 생산 시설을 장악하고 사용자의 지배명령을 벗어나서 사용자의 소유권을 관리· 처분하는 사실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은 사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 된 날(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기업경영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사실상 폐업일(1999.3.31.)까지 회사가 폐업하는 사실을 모르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미루어 퇴직일은 1999.3.31.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도발생 이후 사실상 폐업일까지의 사업주 개입여부 등 생산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처리함.

(임금 68207-510, 1999.7.13.)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Q 질의

- ○○기계(개인)는 1994.4.24.부터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던 사업장으로서 자금난으로 1998.4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8.4.20. (주)○○기계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함.
- ○○기계의 사업주 A는 (주)○○기계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친구 B를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경영을 전담하였으며, 개인사업 폐업 및 신규 법인설립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고용승계)된 가운데 계속 근로하였음.
- 그러던 중 법인의 적자 및 자금난으로 1999.3.31. 사업을 중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A 회시

- 개인이 사업을 행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 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 조건을 법인인 (주)○○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임금 68207-559, 1999.8.3.)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Q 질의

- ○○섬유의 경우 1995.6.1. 이전에는 A가 대표자로서 동사를 경영하였으나, 1995.6.1~1999.3.31.까지는 B, 1999.4.1~6.30.까지는 C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음.
- B는 A의 조카로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동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동사의 생산과장으로 근로하였으며, C는 A의 처로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가정살림을 하는 등 동사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경영책임을 지고 1999.6.30.까지 사업을 행한 자는 A였음
- 이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사업을 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채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이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으로 설립된 이상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는 점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해설: 위 내용 중 “사업을 1년 이상 행한”은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임금 68207-702, 2000.12.22.)

본사와 지점에서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퇴직기준일

Q 질의

- 본사는 안산에 있고 대구에 지점이 있는 사업장으로 대구지점에서 2001.2.20. 본사관할 지방노동관서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안산 본사에서는 2001.3.13.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여 2001.4.25.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 본사소속 근로자 중 2000.8.31.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A 회시

-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하여져 그 효력이 동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중 1인이 행하면 됨. 이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의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임.
- 본사(안산)와 지점(대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각각 다른 일자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2001.2.20.)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해설: 위 내용 중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로 변경되었음.

(임금 68207-387, 2001.5.30.)

사업주와 실질적인 경영자가 다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Q 질의

- A사와 B사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 A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실질적인 경영자인 B사의 대표이사(A사 대표이사의 남편)가 행방불명되면서 2001.6.30.자로 부도가 나자, 동일자로 A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또한 상실처리함.
 - B사도 현재 명의만 존재하고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이며, 제3채권자가 B회사의 명의만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려 하고 있는 상태임.
-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대상사업주는 누구이며, 실질적으로는 A사에서 근무했지만 명의상으로는 B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이유로 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 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함.
- 또한 법 제7조(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관할지방 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임금 68207-640, 2001.9.12.)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Q 질의

- (주)A종합병원은 2000.9.4. 근로자 80여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2001.1.월 사업주 “갑”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 주채권자인 ○○건설이 병원을 임대차하여 병원이름을 B로 변경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리인이자 사업주로 “을”을 선정하였고, 새로운 사업주 “을”은 기존 부터 근로하던 80여명을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중인 환자치료 등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의 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 “을”에 의한 병영경영도 문제가 발생하여 2001.8.월분 급여부터 체불되어 결국 2001.10.1.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근로자 80명이 체당금을 신청하였음.
 -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0.9.4.부터 2001.9.30.까지 기간 중 2001.1.월 사업주 변경이 있었으나 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동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년 1개월 기간 중 사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휴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기간은 11개월 정도일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법 적용대상이 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정지한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사업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면서 소속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승계된 경우 “을”의 사업기간에 “갑”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의 정지일 즉,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임금 68207-58, 2002.1.25.)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Q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함에 있어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감독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되는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 제9조의2)할 수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적용함이 타당함.

(임금 68207-710, 2002.9.25.)

일정시점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경우 사업계속기간 산정방법

Q 질의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기업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이 되어 당해 사업을 8개월을 행하고 있던 시점에서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모두 퇴직함.
- 이와 같이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6개월을 더 지속한 후 도산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인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실제로 1년 이상 사업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는 시점부터 즉,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임금 68207-469, 2003.6.20.)

동일인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임금지급 능력의 판단

Q 질의

사실관계

- “갑”포장의 명의상 대표는 김○○이나 실 경영자는 김○○의 남편 주△△이고, 위 회사가 폐업하기 이전에 이미 같은 지번에 명목상 (주)“을”무역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가 “갑”포장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자 업종을 무역 및 오피에서 “갑”포장의 업종인 골판지상자 제조를 추가하여 “을”산업(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현재 주△△, 주△△의 아들, 조카, 동서 1명, 경리 1명, 운전기사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음.
- (주)“을”산업의 대표이사는 주△△의 동서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주)“을”산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있어 주△△을 사실상 사업주로 송치한 예가 있음.
- “갑”포장과 (주)“을”산업의 업종, 거래처는 동일하며, “갑”포장의 유체동산(기계 장치 등)과 토지 및 건물은 공매처분 되었고, 주△△의 개인 재산은 전무하고 (주)“을”산업 임금대장에는 주△△의 임금은 기록되지 않음.

● 사업주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갑설〉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사업주는 “갑”포장 대표 김○○(실 경영자 주△△)이고, ○○포장이 폐업되고 김○○의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 사실상의 관계를 중시할 때 “갑”포장의 대표자는 실 경영자인 주△△이고, 동일인이 (주)“을”산업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이상 주△△에게 임금지급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병설〉 “갑”포장의 실 경영자가 주△△이고, 동인이 임금지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주)“을”산업의 명의상 대표가 권××(주△△의 동서, “갑”포장에서 관리이사로 호칭)이기 때문에 주△△의 개인 재산이 없을 경우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사무소 의견〉 “병설”

A 회시

- 임금 등 청구권의 채무자는 (임금체불)근로자들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실제의 사용자라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갑”포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동 실제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내지 실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므로 위 “갑”포장과 (주)“을”산업간에 양도양수계약 등을 통해 채권채무가 포괄승계된 사실이 없다면 도산된 “갑”포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주△△)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정책과-335, 2004.1.30.)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여부

Q 질의

사실관계

- 근로자 “갑”이 A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A업체가 극도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A업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B회사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하였음.
- 근로자 “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A회사에 상당한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갑”의 임금채권도 상호간 양도양수 하기로 하였음.
- 근로자 “갑”은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A회사에서 퇴사하였고 B 회사는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도로 인하여 도산의 위기에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갑”은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귀하가 질의한 “영업의 양도양수 전 퇴직 근로자가 양도 또는 양수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 뿐 양도 회사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귀문의 양도 사업주(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과 근로계약 체결사실이 없었던 퇴직 근로자는 양수회사(B)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귀하께서는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임금정책과-722, 2004.3.4.)

사업계속기간의 기산일

Q 질의

- A사업주는 2002년 9월 26일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 동일 주소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형 음식점 개업을 위해 2003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 주방장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방기기 구입 및 설치, 메뉴 개발, 인근지역 홍보, 직원 면접·채용·교육 등의 개업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와 같은 개업준비를 거쳐 A사업주는 2003년 7월 10일 음식점을 개점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 12월 12일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음.
 -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설**〉 음식점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한 2003년 7월 10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2003년 12월 12일까지는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을설**〉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개점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한 시기도 사업활동에 포함되므로, 음식점 개점을 위해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3년 5월 1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때까지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견해

〈**질의사무소 의견**〉 “을설”

A 회시

-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행하고 동법 제7조(구시행령 제4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사업주 요건인 사업계속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자등록일 또는 업종변경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으로 봄.

(임금정책과-963, 2004.3.24.)

대표이사과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과 동일사업주인지 여부

Q 질의

- (주)“A”베스트,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으나 대표이사는 이○○ 동일인임. (주)“A”베스트와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서울지사)는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주)“A”베스트의 직원중 일부는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와 (주)“A”베스트에서 근무하였음.
- (주)“A”베스트는 2004.1.12. 휴업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근로자가 2003.9.15.자로 퇴직하였으며, (사단법인)“B” 산업교육협회(서울본사)도 근무자가 없는 상태임.
-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경우 서울본사는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부산지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실업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협회 부산지사의 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을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법인 통장(서울본사)으로 송금받아 이중 5% 내외의 비용을 인쇄물 및 교육교재 등에 대한 실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부산지사 강××에게 송금하여 왔으나 2003.3.17. 이후로는 부산지사로부터 서울본사로 송금되는 내역이 없으며,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잔고도 존재하지 않음. 2002년1월11일에 부산지사를 운영하는 강○○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도 별개로 가입적용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주)“A”베스트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부산지사)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답설**〉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주)“A”베스트와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는 별도의 법인이며, 또한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 부산지사도 다른 사람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각 별도의 사업체로 보아 (주)“A”베스트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을설**〉 각 법인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A”베스트, (사단법인)“B”산업교육협회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 동일인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명확한 구분 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독립된 각각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사단법인) “B”산업교육협회는 부산지사의 매출금 5%내외의 비용을 받아온 바, 2003.3.17. 이후로는 내역이 없다고는 하나 부산지사의 경우 현재 직업훈련 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도산등사실인정시 임금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시 (사단법인)“B” 산업교육협회 부산지사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의사무소 의견**〉 “갑설”

A 회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법 제6조)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는 당해 퇴직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업주라고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법인인 사업주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하였던 법인이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될 것임.
- 귀문의 (주)“A”베스트와 (사)“B”산업교육협회가 「임금채권보장법」 상 동일 사업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두 법인간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 승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두 법인의 대표이사과 소재지가 동일하고, 근로자 1~2명이 법인간에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 사업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주가 관할 행정관청에 휴업신고한 ‘휴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종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재개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산인정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휴업기간 중 관할 행정관청이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 폐업조치 했다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고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임금정책과-2482, 2004.7.7.)

체당금 신청 시 소속 회사(사업주) 판단 방법

Q 질의

- 본인이 다니던 A건설회사는 1994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2004년 10월 15일까지 주택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경영하던 회사임. 이후 A건설회사는 주택 공사수주 확대를 위하여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추가, 2000년 11월에 A건설회사와 동일한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여 별도로 B실내디자인 법인을 세우고 의장면허를 허가 받았음. 두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이며, 사업장 주소지도 같음. 임직원 직급 및 급여체제도 동일하며 모든 대외적인 업무 또한 A건설회사로 운영되었음.
- 본인은 2003년 6월에 입사할 당시 A건설회사로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으나, 실내디자인 의장면허를 위하여 부득이 근로자 명부는 실제 근무회사인 A건설회사가 아닌 B실내디자인회사에 등재하는데 동의하였음. 이에 따라서 4대보험은 디자인 소속으로 신고하였음. 또한 형식적인 등재였기에 B디자인의 소속 근로자는 본인 뿐 이었음. 회사 동료들 또한 A건설회사 소속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저를 대하였으며, 명함 또한 A건설회사 명함으로 제작 사용하였음. 현재 A, B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로써 임금채불이 발생하여 근로자 전원이 퇴사한 상태임.
-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본인은 사실상의 관계를 따져 A건설회사 소속으로서 체당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법 제6조)는 사업주가 파산 등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때의 사업주란, 동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임.

- 귀하의 질의에서 귀하가 A 건설회사와 B 디자인회사 중 어느 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② 귀하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245, 2005.1.18.)

법법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 (주)○○교육은 2004.2.10.에 개업하여 학습지판매사업을 하다가 2004.11.19. 사업
종목을 기존의 학습지 판매업에 경영컨설팅업(경영부문: 외식사업, 컨설팅 부문:
인테리어사업)을 추가하면서 법인상호를 (주)○○○에스로 변경하고, 사실상
대표자는 동일하나 종전 (주)○○교육 때는 실제 대표자의 처가 명의상대표이던
것을 상호를 변경하면서 실제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실제적으로 종전의 학습지 판매사업은 행하지 않고, 외식사업과 인테리어사업을
행하다 2005.4.10. 사업부진으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업주는 채권자를 피해
도피하여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임.
- (주)○○○에스는 비록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였지만 (주)○○교육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행해왔고, 종전학습지 판매사업을 하던 직원들 중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자들은 승계하여 근로시켜왔고, 회계 또한 종전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해왔고, 사업자
등록상 업무개시일 또한 2004.2.10.자로 되어있음.
- 이 경우 (주)○○○에스의 사업기간을 최초개업일인 2004.2.10.자로 보아야 하는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대표자를 변경한 2004.11.19.자로 보아야 하는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학습지판매업 → 외식사업 및 인테리어)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임.

(임금정책과-1996, 2005.5.25.)

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

Q 질의

● 우리사무소 관내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으로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주)○○ 일보의 소속 근로자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에 불복,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으로 법적인 판단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중 실질적인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을설> 2004.10.14. 사업주의 직장폐쇄 이후 신문발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임시주총에서 법인 해산결의 이후 일부 법인재산을 매각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부 변제하는 등 법인 청산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며, 2004.11.18. 사업주는 조합원 등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등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분명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실질적인 요건이 적합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질의사무소 의견> 전체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해고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사실상 신문발행이 중단된 이후 청산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폐지과정의 하나인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장폐업 관련 행정소송 절차와는 관계없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A 회시

- 귀 사무소에서 질의한 내용은 “A”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 및 쟁의행위를 하자 회사가 직장폐쇄, 법인해산등을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바, 사업주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판정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해당사업장의 실질적인 상태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판정서 내용 중 사업의 폐지와 관련한 실시내용, 인정사실 등은 확인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03, 2006.1.10.)

사업주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가능여부

Q 질의

-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산목적으로 진정하였는데, 사업주 불처벌 의사로 진정 취하시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재진정을 못한다고 함.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임금체불 청산 목적의 진정 취하시에는 차후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당금신청을 할 수 없다.

<을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여도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임금채권인 체당금은 노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 갑설과 을설 중에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상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미지급임금 등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위한 사업주 강제조사가 곤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퇴직급여보장팀-626, 2006.2.28.)

사업주 사망(자살)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Q 질의

- 사업주가 2006년 2월 20일 사망(자살)하여 사업이 정지되었으며, 회사는 양도인이 없는 상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2006.4.17. 우리지청에 신청하였음.
- 사업주는 영세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망시에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
 -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되는지
 - 기타 처리방법이 있는지 여부

A 회시

-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하는 여부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에서도 관련서류 미첨부를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회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646, 2006.5.16.)

아파트관리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Q 질의

-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주)○○주택관리에서 △△종합관리(주) 창원지점으로 위탁업체 변경시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고, △△종합관리(주) 창원지점에서 (주)□□로 위탁업체 변경시에는 자신이 실제 경영하면서 사실상 상호만 변경하였던 것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피진정인의 주장만으로 승계를 인정, 퇴직금을 해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설>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관한지침에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행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행하게 되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을설> 상기 지침과 같이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책임은 없으나, 피신청인이 종래 업체인 △△종합관리(주) 창원지점을 실제 경영하다 (주)□□를 설립,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영업에 있어 연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된 특약이 없더라도 소속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인정된다 할 것임.

<질의사무소 의견> “을설”

A 회시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 직원의 임면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다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귀 지청의 질의내용 대로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961, 2006.6.9.)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Q 질의

-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임금체불근로자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면 체불금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체불금품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왜 도산사실인정신청은 임금 등 체불근로자 당사자만이 해야 하는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직접불의 원칙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구법 제6조제1항(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041, 2006.6.15.)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원도급을 받은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도장공사)을 주었고, 하도급회사는 이를 다시 사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에게 부분하도급(도장공사)을 주어 개인건설업자가 도장공사를 시공하던 중 적자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는바,
- 위 개인건설업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근 1개월분 임금을 체불하였고 부동산·동산 등 재산이 전무하여 체불청산능력이 없고 산재보험 일괄적용 등으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위 개인건설업자는 위 공사장에서 임금체불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청구토록한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한 공사를 시공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러한 사례는 빈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며, 만약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업종의 공사(도장공사)를 재개할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이미 행한 도산사실인정을 취소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업무지침 p43에 의하면 일시중단으로 예상될 경우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상당기간 지켜보고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

〈갑설〉 업무처리지침 p.39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함(다른 공사장 발견도 어려움).

〈을설〉 개인건설업자의 경우 하나의 공사장에서 체불 발생후 공사를 종료(폐지나 중단 등)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업종의 공사를 시공한다면(사실상 빈번하고 충분히 예상됨) 사업폐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도산사실 인정은 취소하여야 함이 타당함.

〈질의사무소 의견〉 “갑설”

A 회시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개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도산등사실 인정의 형식적 요건(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일 것)과 실질적 요건(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221, 2006.6.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질의

- □□관광(주) (이하 “A”로 약칭)와 (주)새○○관광개발(이하 “B”로 약칭)간에 체결한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A”기업의 차량 일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권 등을 “B”기업에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A 회시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기업과 B기업간에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B기업이 A기업을 인수하면서 A기업 차량 20대중 6대만을 인수하고, A기업의 채무 중 전세버스 차량할부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A기업 근로자 29명이 2004.8.11. A기업에서 자진 사직하고 같은 해 9.1 사직자 중 일부인 18명이 B기업에 신규 입사하였다면 A기업과 B기업과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655, 2006.9.27.)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 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 판단 방법
Q 질의

- “원청업체의 사내협력업체인 하청업체 A사(개인회사)가 2005.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원청업체가 A사의 사업능력을 이유로 8월말까지만 사업을 하고 A사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B에게 A를 대신하여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자, B가 A에게 9월 흑자 전액을 양도한다는 양도각서를 작성해 주고, 2006.9.1.부터 A사의 사업을 인계받아 동일장소에서 업종 변경 없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고 사업을 하다가 같은 해 9월말 폐업을 하였을 경우”
- 가. B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주 요건(「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2006.8.31. 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대상사업주를 A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B로 해야 하는지 여부
- 다. B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06.8.31. 퇴사한 직원과 고용승계된 직원들 모두 대상사업주를 A로 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가. A의 채권·채무가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사료됨.

- 나. A가 B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회사 A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 B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2006. 8. 31.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B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채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 다. 위 “나”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가 B에게 영업의 양도를 하였다면 A가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2006.8.31. A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A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채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B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4055, 2006.10.24.)


구두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Q 질의

- 사업주 “갑”이 사업주 “을”에게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을 서면계약 작성없이 구두로 양도하였을 경우 사업주 “갑”과 사업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양수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위 사업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양수 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한 채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시

- 양도·양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 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갑”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4413, 2006.11.21.)

사업의 영업양도·양수 판단 방법

Q 질의

- (주)○○통신기술(이하 “A사”라고 함)이 (주)△△로부터 무선기지국 설치개발용역을 약 16억원에 도급받아 이를 9억원에 (주)○○○네트워크(이하 “B사”라고 함)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나 사무집기를 무상제공하고, 재하도급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9억원 중 5억원으로 정산완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양수를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A 회시

-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판 91다15225, 1991.8.9., 대판 93다18938, 1994.11.18.)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와 B사간에 무선기지국 설치개발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사 퇴직근로자 약 24명 중 약 7명만이 B사에 입사하였으며,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B사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사가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일부를 A사에게 전대하여 사용토록한 점, B사의 대표자가 A사의 퇴직근로자이나 A사와 B사는 상호와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 A사와 B사가 세금 등 회계처리를 별도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와 B사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50, 2007.1.16.)

관계사 간 전적이 이루어져 두 회사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Q 질의

- 관계사 간 전적이 이루어져 두 회사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A 회시

-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 바 전적은, 근로관계의 변경 즉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사용자)의 변경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여기서 동의라 함은 사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입사 시점에서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말하고, 동의의 방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무방하며, 동의의 시점은 인사이동 시점뿐만 아니라 이동 이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임.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입·퇴직절차 및 근무행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당해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일방적인 조치임을 알고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징계나 해고 등의 위협으로 이의제기가 어려웠는지 여부 및 사회적 통념 등 종합적으로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의 전적이 유효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따른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는 각 기업별의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기업에 대하여 청구하면 될 것이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최초로 맺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최초 근무한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하되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각 기업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관계사간 전적이 유효한 경우라면 각각의 기업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대상 사업주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적이 유효하지 않다면 최초 근무한 사업장이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근무 사업장을 상대로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되, 최종 근무한 기업으로부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79, 2007.1.24.)

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은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경우 당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접수 후 처리기한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임금복지과-1056, 2009.7.15.)

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 근로자 ‘갑’은 급식업체인 A사에 입사하였는데 A사는 급식자재 공급업체인 B사를 가공의 회사(PAPER COMPANY)로 두고 B사로부터 급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옴(A사와 B사의 실제 사업주는 동일하나 B사는 서류상 A사 대표의 친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임)
- B사는 서류상으로는 A사와 다른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었으나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는 A사 대표 지인의 사무실이며, 이곳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음
- A사 사업주는 A사 소속 직원 3~4명을 임의로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켰으나 근로자들은 모두 A사 근무지에서 근무함.
- 근로자 ‘갑’은 사업주가 소속을 B사에 두라고 하여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A사와 B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업주는 임금의 일부는 A사 명의로 일부는 B사 명의로 지급함.
- A사와 B사는 모두 부도로 폐업하여 근로자 ‘갑’은 퇴사한 상태임
- 두 회사 모두 사업이 폐지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을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와 근로자 ‘갑’의 경우 체당금 지급(청구)범위에 관한 질의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등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 이 때의 사업주란, 동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에서 A사와 B사(가공의 회사) 모두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B사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복지과-719, 2011.2.24.)

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

Q 질의

- 2009.2.20. 회생절차개시신청, 2009.3.25. 회생절차개시신청(2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서류가 제척기간 만료일(2011.2.21. 18:00 이후)에 도달하여 당직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지청 업무시간 종료(18시)후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다음날로 접수된 경우 제척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제출일 2011.2.22. 기준으로 보아 제척기간(2011.3.24.)이 도과하지 아니한 것임.
 - 설령, 2011.2.21.이 제척기간 만료일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을 6일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159조에 따라 ‘일’의 말일이 기간의 만료인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을 지나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의 24시가 되기 전까지 제출된 민원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과-283, 2011.3.2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Q 질의

- (질의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판단하는 시점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때인지, 처분할 때인지
- (질의2)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이 폐지된 날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도산사실 인정이 가능한지
 - * 2010.7.19. 근로자 ‘갑’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0.12.2.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이후 같은 사업장 근로자 ‘을’이 같은 해 12.7.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2011.3.1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 (질의3)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서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또는 처분 무렵에 사업이 폐지된 사실이 있으면 족한지 아니면 사업이 폐지된 날을 정확히 확정해야 하는지)해야 하는지

A 회시

- (회시1)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상태가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로 판단.
- (회시2)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불인정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사정변경(법령개정 등)을 이유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정변경 사유가 도산등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새로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정처분도 할 수 있음(근로조건지도과-1834. '08.6.2 같은 취지 행정해석)

* 행정심판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으로 최초의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 (회시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인 사업의 폐지는 생산·영업 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된 날을 확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결정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폐지 여부 등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 인정결정을 하는 것임.

(근로복지과-1934, 2011.8.29.)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및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Q 질의

- 장기간 사업정지 및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상도산 인정 후 해당 사업장이 사업을 재개할 경우 체당금 부정수급 판단기준

A 회시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됨.
- 사실상도산 승인 후 사업재개가 이뤄질 경우 부정수급 판단
 - 부정수급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및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偽計)의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근로복지과-1139, 2012.4.03.)

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Q 질의

사실관계

※ 주요사항

- 1987.3월 설립된 여론조사 전문기업 A리서치(주)는 2011.10.6. 부도 처리되어 2011.12.23.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 2011.4.29. A리서치(주) 대표이사 a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B컴퍼니(주)는 사내분사(산재보험 성립신고) 형태임
 - 직원들은 A리서치(주)의 연구조사부에서 근무하던 40명의 직원들이었으며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음
 - B컴퍼니(주) 대표이사 b는 A리서치(주)의 부사장으로서는 사실상 a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
- 형식상 법인만 2개로 분리되었을 뿐 자금운영 및 관리, 경리/회계, 인사노무 관리 등은 모두 A리서치(주)에서 전담
- A리서치가 2011.10.6.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자 B컴퍼니는 2011.10.31.자로 전체 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상 회사가 소멸

- 이와 같이, 형식상 2개의 법인으로 분리(고용보험도 별도 성립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제2법인(B컴퍼니)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경우에, B컴퍼니 소속 근로자들이 A리서치(주)를 대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귀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5, 2005.1.18.)에 의하면,
 -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사업주를 판단하게 되는데,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없지만 6개월 이상 법인이 존속한 만큼, A리서치와는 별도로, B컴퍼니를 대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임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적용되며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단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임.
 -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써 「산재보험법」 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근로복지과-4099, 2012.11.27.)

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Q 질의

- **병원은 경영악화로 사업주(A:양도인)가 양수인(B)와 2011.9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11.11.1.자로 **병원을 양수하여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A는 2011.10.31.자로 폐업신고를 함. 양도양수과정에서 2011.10.31.자로 퇴사한 근로자들이 A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회사로 이전될뿐 양도회사가 도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사업주(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 귀 법인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서의 양도인(A)과 양수인(B)가 체결한 “**병원 양도양수계약서”의 제1조(양도양수계약의 대상), 제4조(정산 및 잔금), 제7조(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계약은 물적·인적 조직이 양수인(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영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606, 2012.12.21.)


 사업의 개시일


 질의

-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주의 지시아래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운영(A→B→C)하여 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 되었을 때 사업의 최초 개시일을 어느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곤란하나,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규정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은 개인, 법인기업은 법인을 각각의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장소에서 업종 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고,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서에서 근로자들의 소속이 A→B→C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채권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사업개시일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31, 2013.1.09.)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Q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 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제2호의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서 ‘공사실적액’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 공사실적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수입금(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공사수입금(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 - 3535, 2012.10.17.)

(근로복지과-1027, 2013.3.2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
Q 질의

-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후 법인(본사) 소재지를 이전하고 상호도 변경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이 어디인지

* 신청인은 2012.3.4. 00토건(주)에서 퇴직, 2012.4.9. 00토건(주)에서 □□토건(주)로 상호변경 하면서 본사 이전 (2012.12.18. 폐업신고)

A 회시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지청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이전 후 사업실적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퇴직근로자 및 결산 등 회계자료를 관리했던 회계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신청서 처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1456, 2013.4.26.)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판단

Q 질의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의류제조업자로 4대보험 미가입, 상표법 위반(짝퉁 의류제조 및 판매) 형사처벌, 세법상 세금납부 전무 등 불법업체를 경영한 경우에도 법령상 대상사업주 요건을 갖춘다면 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금 지급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법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하고(이 경우 대상 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 질의한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는 그 사업(장)의 반사회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산재보험과-3296, 2004.7.31., 적용팀-4707, 2006.8.3. 참조)
 - 동 업무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와의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신 후 처리.

(근로복지과-3573, 2014.9.2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
Q 질의

-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내에 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의 반려요청(사업주 구속으로 조사 불가)에 따라 반려된 후 재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도산신청·재신청일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에 관해 우리부 질의 회신 ① ‘근로복지과-3117’ 및 ‘근로조건지도과-2307’과 ②임금복지과-342 중 어느 행정해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A 회시

- 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다면 ①의 해석을 적용하여 최초 도산신청일(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4011, 2014.10.28.)

둘 이상의 도산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산정 퇴직기준일 적용 및 제척기간에 관한 해석

1. 검토배경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반려 요청 등으로 반려된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다시 신청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 최초신청일(퇴직기준일)과 도산신청 제척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에 혼선*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통일된 지침을 시달하고자 함
 - * 「임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7조제3호 관련

2. 그간 행정해석 및 문제점

- (그간의 행정해석) '12.9.11. 도산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반려 요청 등으로 반려된 후 다시 신청된 경우에 대해 최초신청일(퇴직기준일) 판단 행정해석을 시달<별첨 참조 1,2,3>

※ 행정해석 주요내용

<질의 요지>

○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반려된 이후 재차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반려 처리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11.5.20.)에 대해 기 시달[근로조건지도과-2307 (2008.7.1.)] 된 해석에 의거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상황개요]

'10.11.30	'11.5.20	'11.9.20	'11.12.12	'12.6.15
근로자(갑) 퇴사일	도산신청(최초)	반려요청(수리) <small>*사업주연락두절로 조사불가능→ 대리인(노무사) 반려요청서 제출</small>	도산신청 (재차신청)	도산인정

<회시 내용>

- 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관련 기존 질의회신[퇴직급여보장팀-1379 (2006.4.24.) 및 근로조건지도과-2307(2008.7.1.)] 해석내용에 변경이 없고<참고1,2>
- ② 임금복지과-342(2010.3.26.)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제척기간’에 관한 회신으로 <참고1,2>의 내용과 별개의 내용임<참고3>

- (문제점) 동 해석에 따라 지방관서에서는 신청서가 반려되었던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을 경과(제척기간 도과)하여 재신청한 경우
 - 위 회시내용 ①번 해석과 같이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도산인정 결정을 하고, 최초 신청일을 퇴직기준일로 보아야 하는지
 - ②번 해석과 같이 제척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반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 따라서, 지방관서에 명확한 해석을 제공할 필요

3. 검토내용**□ 시행령 규정 내용**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제척기간(시행령 제5조)과 둘 이상의 신청서가 있는 경우 최초의 신청일을 퇴직기준일로 적용(시행령 제7조제3호)하는 규정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규정임
- (제척기간) 모든 도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신청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시행령 제5조제2항)
- (퇴직기준일) 도산인정의 사유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대상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산인정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되,
 - 이때 도산인정 사업주에 대해 도산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신청일을 퇴직기준일로 하여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임(시행령 제7조 본문 및 제3호)

□ 검토의견

- (제척기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간 초과에 따른 반려 처리가 타당
 - 도산인정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도 각각의 신청인의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 동일인이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재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기한 준수 여부(퇴직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지방관서의 편의에 의한 반려의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척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다57419,57426 판결

- 정당한 반려사유에 의한 반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서류 보완요구 등), 근로자(대리인)의 자의에 의한 반려의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제척기간 중단의 효과도 존재하지 않으나,
- 정당한 반려사유가 없음(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반려)에도 불구하고 반려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퇴직기준일 적용) 도산이 인정된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인정신청의 기초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도산신청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자 적용
 - 다만, 둘 이상의 신청서는 각각 제척기간 내에 신청이 된 것을 말함. 즉, 제척기간 내에 접수되었던 신청서(반려된 신청서 포함) 중 최초에 접수된 신청서의 신청일을 퇴직기준일로 적용

4. 지방관서 시달방안

- 접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반려(행정청 자의에 의한 반려 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반려 통보

- 이 경우, 제척기간 내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과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필요시 유선 안내 및 제척기간 안내 확인서 징구

5. 행정사항

- 동 지침에 배치되는 ‘도산등사실인정 최초 신청일 판단’에 관한 행정해석 내용은 동 지침 시행이후 폐지함

(근로복지과-4327, 2014.11.18.)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

Q 질의

- A(주)는 폐업되었으나 B(주)의 사업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A(주)와 B(주)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주)는 B(주)의 한 부서인 부설연구소가 법인화되어 설립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인사적·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직원들도 B(주)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서 B(주)의 하나의 부서로 볼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임.

A 회시

- A(주)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B(주)로부터 인사적·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B(주)의 하나의 부서로 보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 B(주)가 A(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B(주)가 A(주)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및 체불임금 지급의무 등을 확인 한 후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937, 2015.4.1.)

도산등사실인정 처리시 도산신청서 처리방법

Q 질의

- 개인업체·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하였으나 실질은 하나의 사업인 사업주에 대하여 각각 법인을 달리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각각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 만약, 한번 밖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면 신청서가 먼저 제출된 날짜를 퇴직기준일로 하여 채당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사업체 운영 현황

- 같은 장소(경기 오산시)에서 고○○이 실질 대표로서 사업을 경영
- 2011.1.20. 농수산유통센터(대표 고○○)(A) 설립·운영
 - ⇒ 법인 전환, 2011.3월 (주)제일농수산유통센터(대표이사: 고○○)(B)
 - ⇒ 2014.2.17. 부도
 - ⇒ 2014.2.18. 제일농수산마트(대표자: 장△△, 고○○의 시제)(C)
 - ⇒ 2014.6.10. 명칭 변경, (주)오산농수산물유통(대표이사 : 장△△)(D)
 - ⇒ 2014.8.26. 폐업
- (C)(D)의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는 장△△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이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

A 회시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지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B와 D가 같은 사업주이고, D에 대하여 도산등사실 인정 결정을 하였다면

- 동 사업주에 대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262, 2015.4.24.)


사업재개 의사 표명시 사업폐지 검토
Q 질의

- 병원이 6개월이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병원 내 기계, 집기도 없고 근로자도 없는 상황에서 대표가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시

-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때에는,
 - 사업주로부터 자금 확보 계획, 의료 기계 및 자재 확보 계획, 의사 등 직원 채용계획 등의 명시적인 사업재개 계획을 제출 받은 후 사업 계획과 전망, 병원 활동 중단 기간,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216, 2015.9.21.)

도산신청일 및 제척기간

Q 질의

- (상황) 2014.3.1. 퇴직한 근로자 A는 2014.8.20.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필요서류를 협조 받지 못하였다며 반려처리
 - 이후 근로자 B가 2015.2.5.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질의) 도산신청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 회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2이상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거나, 근로자 자의에 의한 반려가 아니라면 최초 도산신청일(2014.8.20.)을 기준으로 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54, 2015.10.8.)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Q 질의

-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의원’과 ‘B협회’ 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 없이 운영하던 중 ‘A의원’에 대해 도산이 인정됨.
- ‘B협회’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 ‘A의원’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협회’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6.3.16.)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Q 질의

사실관계

<주요 상황>

- (주)○○시스템은 2005.12.27. 축산물 가공업종의 사업 개시
 - 2017.1.9.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7.2.2.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약 △1억 5,700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2017. 4. 3.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 이후 2017.5.19.에 사업자등록폐지 및 근로자 전원 퇴직이 이루어진 후 퇴직근로자 중 1명이 2017.9.19.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위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종으로 2006.6.26. ○○푸드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 중
 - ○○푸드는 2017.7.21.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음.
 - * 당초 법인사업체 근로자 6명 중 1명은 2017.4.1.자로 퇴직한 후 개인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음.

- 형식상 2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 신청 대상 법인사업체와 나머지 개인사업체의 별도의 법인격을 존중하여 사업주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법인격 부인이론’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사업주 요건 및 사업 계속여부를 판단하여 불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A 회사

- 「임금채권보장법」의 사업주는 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개인 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 질의한 것처럼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를 동일한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 위해서는 단지 두 회사의 동일한 소재지와 대표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두 회사 간의 자금운영 및 관리, 경리·회계, 인사노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체가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체의 회생개시결정이라는 체당금 지급사유로 법인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며,
 -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등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있어야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13, 2018.1.31.)

2. 재판상 도산 (회생절차 및 파산)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파산법」 규정에 의거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은

Q 질의

●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신고된 재단채권 68억원(임금채권, 국세, 지방세, 공과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임.

● 법원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1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체당금의 산정방법은

<답설> 법원에서 최우선변제 채권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최우선변제 채권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금채권으로 충당하여야 함.

<을설>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서 전체 재단채권액을 우선순위 구분 없이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액을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병설> 법원에서 배당 시 전체 재단채권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을 산정

A 회시

-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당해 사업체의 재산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변제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한편 재단채권의 일부로서 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은 「민법」상 채무변제의 순위(제477조),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임금 68207-745, 2002.10.12.)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Q 질의

-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A 회시

-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재건형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과 청산형 도산(도산등사실
인정)은 도산사유에 대한 각각의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도산사유로
처리하여 각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도산사유 인정일 간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에는 체당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하나의 사유로만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591, 2007.9.14.)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Q 질의

- 법원이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행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재판상 도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법원이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였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구시행령 제4조 포함)의 체불 임금 등의 지급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변제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자는 실질사업주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사실확인복명서」에는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사업주를 모두 명기하고, 각각 사업장 운영 및 근로자의 지휘감독 등에 관여한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확인과정에서 명의상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 명의상 사업주의 경영관여 정도 등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8.8.)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

Q 질의

-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의 공익채권변제

A 회시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지도과-665, 2009.2.4.)


체당금 지급관련
Q 질의

- 질의1) 회생절차개시를 사유로 접수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반려받고 직권파산을 이유로 다시 체당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A사가 회생 종료된다면 반려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회생종료(회생절차종결) 이후에 다시 신청하더라도 회생종료 전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1번 질의와 같이 직권파산선고를 이유로 체당금 지급청구가 가능하고 인상된 체당금상한액이 적용된다면 회생개시결정을 사유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변경 후 노동부 고시(2007-50)를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 체당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 회시

- 회시1) 체당금 확인신청서 등 민원서류는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해 신청인이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 후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회시2) 회생절차의 종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은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므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음.
- 회시3) 체당금 상한액 고시(2007-50호)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체당금 수령이후 체당금 상한액 고시가 상향되었다는 사유로 차액분을 청구할 수는 없음.

(임금복지과-162, 2009.5.14.)

회생절차 폐지결정

Q 질의

-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일과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일 사이 퇴직한 경우, 재판상도산에 의한 채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시

-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확정되므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재판상 도산에 의한 채당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이후에는 채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어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33, 2009.6.10.)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Q 질의

- 질의1) 법원이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상 도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사실상도산인정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시2)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817, 2010.2.18.)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 법원이 A사업장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 체불근로자가 지방관서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구시행령 제4조제3호)는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경우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동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복지과-97, 2010.3.9.)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불근로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 지방관서에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검토과정 중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단절시키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지방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있으므로 즉시항고·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확인신청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임금복지과-336, 2010.7.26.)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Q 질의

- 개인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구시행령 제4조제2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써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한 개인회생절차는 사업주 ‘개인’이 사업체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경우와 순수한 개인 소비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사업주 ‘개인’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구시행령 제4조제2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상의 신청이유와 진술서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등을 토대로 기업활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1910, 2011.8.26.)

파산폐지 결정이 채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Q 질의

-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한 경우 채당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채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귀문 질의와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파산 폐지의 결정을 한 것은 판결문의 결론부분과 같이 채무자의 자산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뿐 파산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채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2973, 2011.11.28.)

 위장폐업 관련

Q 질의

- A(주)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나 동 절차가 폐지결정 되고, 회사 소유의 자산 및 사업주 개인 재산까지 압류되어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채 및 처가 등 친지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위장폐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간의 사례를 통하여 “기업의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기존 기업을 허위로 폐지한 다음 기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할 것임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주)가 회생절차폐지 이후 A주식회사 설립시 A(주)의 자산 양도 등 자금의 출처, 사업의 범위, 근로자 고용승계, 실질적인 사업운영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3429, 2012.10.9.)

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Q 질의

-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12.5~7월분)를 지정변제충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귀 지청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또한,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근로복지과-3427, 2012.10.9.)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

Q 질의

- 개인기업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후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별도의 직권파산선고를 행한 경우 사업주 개인에 대한 직권파산선고를 사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면 기업 활동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제1호)의 사유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복지과-3559, 2012.10.21.)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당금 지급여부

Q 질의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A 회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면책이란 자연인(개인) 파산자에 대하여 면책불허의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절차상 인정된 채무에 대하여 파산종결 후 재판(면책허가결정)으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즉,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종결 후의 재판(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제하여 채권자의 추급(추심, 변제 청구 등)을 차단하고 채무자에게 갱생기회를 주기 위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채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제1호(파산선고))에 따른 재판상도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인사업주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상의 신청이유, 채무가 증대된 경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임.(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431, 2011.4.4.).

(근로복지과-426, 2013.1.31.)

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Q 질의

- 개인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고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A 회시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써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구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817, 2010.2.18., 근로복지과-431, 2011.4.4.)
- 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67, 2013.2.13.)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총당 성격

Q 질의

-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법정변제에 관련된 근거*(2011.6.1. 근로복지과-1058)가 적용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A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또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초로 지급된 급여가 특정 월을 지정하였으면 그에 따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028, 2013.3.22.)

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

Q 질의

- 프랑스에 소재한 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바로 한국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국내지점(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채불임금 구제 방법
* 프랑스 법인이 국내에는 별도의 국내법인을 세우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함
- 질의1) “프랑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바로 한국에도 적용되는지, 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본사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려주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질의2) “임금채불이 발생했을 때 한국 내에서 어떤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모두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을 진정하고 한국에서 임금채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질의3) “임금채불 소송을 진행할 때 피고는 프랑스 본사인지 또는 국내지점인지, 국내에 있는 통장이나 기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질의4) “가압류할 재산이 국내에 없는 경우 국내소송의 판결을 가지고 프랑스 내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한국 직원들도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질의5) “임금채불소송이 여의치 않아 채당금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프랑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해주는지”에 대하여

A 회시

- 질의1) 동 질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동 법률을 관장하고 법무부(상사법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1조에 따르면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국내 법원에 ‘승인절차’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질의2) 국내법은 속지주의 원칙이므로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구제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국내에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 질의3) 동 질의는 「민사소송법」 관장 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판례 등*을 해석해 보면 임금채불소송 진행시 피고는 법인격이 있어야 하므로 프랑스 본사 회사가 되어야 하며, 주소지를 국내의 영업소로 기재하여 국내 법원에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래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그 밖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그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에 그 밖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 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어서 비록 사건이 그 사무소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고, 또한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오늘날, 고도의 조직과 통제력을 가지고 지점과 영업소를 관리하는 기업에 있어서 지점이나 영업소가 자신과는 무관한 업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본점의 신속한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 반할 우려도 적으므로, 그러한 외국법인은 「민사소송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보통재판적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외국법인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1.1.30. 선고 99나68425 판결)

- 질의4) 동 질의는 「국제사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5) 동 질의는 첫 번째 질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상기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고
 - 현행 「임채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므로 프랑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판결문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191, 2014.4.1.)

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

Q 질의

-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2014.6.26.)한 이후 도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2014.8.22.)를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유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재판상도산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제척기간이 도과함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채당금의 지급사유는 ①파산 선고의 결정, ②회생 절차개시의 결정,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등입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도산등사실인정은 별도의 채당금 지급사유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신청을 유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채당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도산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퇴직기준일로 하여 채당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947, 2014.10.2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확인신청서 처리

Q 질의

- A라는 개인업체가 있고, 동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는 을(부인)이고, 남편인 갑과 공동 경영하고 있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만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을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황임.

※ 공동 사업주(명의 “을”, 실질 “갑”)로 2명 모두 사법처리

- B라는 법인(대표이사, 을은 동 사업장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 의류수출)과 C라는 개인업체(스크린인쇄업체)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동 업체와 A업체는 의류 제조 관련 업무로 사업상 연관은 있고, 남편인 갑이 운영하는 업체는 별도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하지 않았음

- 동 A라는 업체가 재판상도산현황발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동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상 도산인정을 하여 근로자들의 체당금신청에 대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으므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함

〈을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이나 법원에서 동 사업 운영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법인 사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임
- 개인 사업에 있어 명의 대역자와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 대표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함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부인(사업자등록상 대표)과 남편(실질 대표)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의 사업주이고 그 중 부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으나,
 - 남편(실질대표)은 법률상 도산(재판상 도산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145, 2015.4.16.)

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1. 검토 배경

-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를 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대해 종전의 해석과는 다른 질의 의견이 있어 재검토할 필요

2. 그간의 해석 및 신규 의견

- (종전 해석)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7조제1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는 종료되고, 제7조제2호(파산선고)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
 - 따라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선고일만을 기준으로 1년전이 되는 날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해석

임금복지과-102, 2011.1.10. 등 2건: <붙임1> 참조

Q 질의

-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 파산선고(「통합도산법」 제6조)한 경우에는 그간의 해석과 같이 제7조제2호(파산선고)에 따른 지급사유만 존재하나
 -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타당

A 회시

-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도 종료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지급사유만 존재
- 이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 파산선고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파산된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시켜 회생절차개시결정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타당
-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회생절차개시시각결정 포함)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또는 파산 선고일’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판단하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하고,
 - 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

(퇴직연금복지과-2164, 2015.7.6)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 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Q 질의

사실관계

○ 회생절차 개시신청('13.4.1.) → 회생절차개시결정('13.4.20.) → 회생계획인가
결정('13.12.20.) → 회생절차폐지결정('15.2.10.), 직권파산선고('15.2.10.)

- 질의1)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회생개시절차가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A 회시

- 질의1)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하나, 그 사유가 종결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당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당 기업이 회생을 위해 제출한 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한 것으로 정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 종결과는 다른 것임.
 -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회생절차 종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체당금 지급사유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2) 회생개시절차가 폐지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개시된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것임.

*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함(「통합도산법」 제6조)

- 한편, 질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의 파산선고의 결정에 따른 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60, 2015.7.6.)

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채당금 지급 여부

Q 질의

- 법원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4.21. 파산선고 결정 이후 파산을 진행할 경제적 실익이 없어 2016.3.10. 이시폐지결정을 하고 2016.3.10. 파산폐지가 공고되어 파산폐지가 확정되었을 때
 - 파산폐지 결정이 채당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채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안과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폐지 결정을 한 것은
 - 파산절차를 파산의 목적인 배당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의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
 - 파산폐지 결정에 따라 파산선고가 소급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따른 채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46, 2016.7.26.)

회생절차폐지결정 관련 항고 취하

Q 질의

-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구체적인 내용은 회생절차폐지 결정일(2016.11.16.) 이후 사업주가 즉시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6.12.7. 및 2016.12.9.에 체당금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접수일 이후인 2016.12.12.에 항고를 취하한 경우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이 되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없어져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으나 확정되기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 이후에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소 이후에 취하를 한 경우에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체당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한 점, 체당금 신청 당시에 지급사유가 해당되어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후에 상소 취하를 할 경우에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취지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취하 전까지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15, 2017.5.1.)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

Q 질의

-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으나 즉시 항고를 한 경우에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A 회시

- 파산선고 결정의 효력은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를 신청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파산선고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없어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점, 마찬가지로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에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산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파산선고 결정이 취소될 경우에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결정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하므로, 소멸된 파산선고 결정을 이유로 지급한 체당금은 「임금채권 보장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3, 2017.8.25.)



제 3 장

체당금 사실확인

제 3 장 체당금 사실확인

법원의 배당여부와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질의

- 법정관리 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A 회시

-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임금 68207-553, 1998.8.28.)

체당금 산정 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Q 질의

- A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으로, 동사의 사업주는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근로자 B(퇴직당시 만 40세, 30일분의 평균임금 200만원)는 6년간 근무하여 1,2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300만원)를 지급함에 따라 현재 900만원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임 (임금 체불액은 없음).
- 이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인데, 체당금의 지급액이 510만원(월정상한액 170만원×3년)인지 아니면 210만원(51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300만원)인지 여부

A 회시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현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510만원임.

(임금 68207-636, 1998.9.26.)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Q 질의

-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까지 동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답설>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제3자가 당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체당금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을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는 당연히 체당금에까지 효력을 미침. 이 경우 체당금의 50%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50%는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병설> 제3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은 “을설”과 같으나, 근로자와 압류권자에게 50%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양자간에 배분금액을 산출하여,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배분 금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A 회시

-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청구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청구권으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하는 권리와는 당사자 및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임.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 68220-698, 1998.10.21.)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질의

-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채권(약속어음 등)을 양도받은 경우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기존 임금채권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이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채권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사용자에게 대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방법

A 회시

-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지급된 경우 그 어음·수표의 지급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대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만약 임금채무의 존속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용자의 채권(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므로,
 - 체당금 지급시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에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20-842, 1998.12.16.)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질의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근로자들이 생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산·유체동산·원부자재·기타 생산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 및 자산운용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여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수금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근로자들이 최근 3월 이내 체불임금의 전액청산이 어려운 상태인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양도받은 채권 중 부실채권의 양도만을 계약당사자가 무효 또는 취소한다면 동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어야 함.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임금채권의 효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요건이 될 수 있음.

(임금 68220-53, 1999.1.23.)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Q 질의

- 근로자의 체불임금 월별내역 중 월급이 최저임금(월단위환산액)에 미달하는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체불된 임금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각 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
-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임금 68207-360, 1999.12.27.)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Q 질의

- ○○여객(주)는 1995.7월부터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 1998.7.10. 회사 부도로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자 소속 근로자들은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해 동 일자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 등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현업에 종사하였으며,
 - 부도당시 감사로 있던 A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1999.12.30. 서울시에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함.
-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현황이 1998.3~7월분 임금, 1997.2/4분기~1999.3/4 분기 상여금 및 퇴직금인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

<갑설> 근로자들이 1998.7.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자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고 근로자들은 계속 현업에서 근로하였으므로 동 사직은 비진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당금은 최종 퇴직일인 1999.12.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동안에 체불임금(상여금 포함)이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을설> 근로자들이 1998.7.10. 사직서를 일괄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채권확보를 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들은 1998.7.11.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당금은 1998.7.11.부터 1999.12.30.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따라서 최종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 동안에 체불임금(상여금 포함)이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아니고 “1998.7.11.~1999.12.30.까지의 퇴직금”임.

A 회시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계속근로년수에 의한 퇴직일 이전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회사(법인체)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재산에 대한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전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보장이 되는 퇴직금채권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임금 68207-14, 2000.1.10.)

법원의 배당 이후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질의

- ○○○(주)는 약 5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1997.5월부터 사업을 하던 중 2000.9.30. 파산신청을 하여 10.9.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에 대해 관리 및 환가중에 있음.
- 2000.11.7. 채권자 신고시 신고된 채권액은 총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임금채권은 49억원이나, 회사의 총재산은 환가시 약 10억원 정도임.
 - 임금채권 49억원중 체당금의 지급범위 및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7억원 정도임.
- 법원으로부터 실제배당이 있는 이후 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체당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체불임금에서 배당액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므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동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함.

(임금 68207-685, 2000.12.18.)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질의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

- 도로포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이 공사수주 격감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다가 2000.11.30.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공사중이던 3개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지됨.
- 현장소장 등 본사 소속 근로자들은 부도당시 2~3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부도 당일 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함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발생함.
- 퇴직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지급독촉을 받게 된 사업주는 2000.12.4. 3개 건설현장별로 당시까지의 공사실적에 대해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변제조건으로 채권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게 동 내용을 통지함.
- 2001.1.5. 퇴직한 근로자대표 ○○○는 동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지방노동 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채권양도의 효력여부

- 2000.12.4. 노사간에 체결한 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상 채권내용은 기성금이 아닌 “○○건설 ○○현장 ○○○외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채무자인 원청업체에 통보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기성금 ○○○원”이라고 기재됨.
- 이렇게 채권양도계약서상에는 표시의 하자는 있으나, 제3채무자에게 통보된 내용이 적절하다면 노사 당사자간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한지와 유효하다면 양도된 채권금액만큼은 체불임금에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채권양도에 따른 체불임금 변제 범위

-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가 자재 확보, 노임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완료 후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이를 “선급금”이라 함)하고, 매월 공사진행에 따라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에서 공제 즉, 선급금을 전공사기간의 월수로 배분한 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때 당해월에 해당하는 선급금만큼 제외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선급금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조치함.
- 하청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하도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원청업체는 기지급한 선급금 중 남아있는 금액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보다 많으므로 기성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의거 하청업체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작성한 선급금보증서(보증서일반약관)에도 주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 채무에 대해서는 미회수채권액 중 미지급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 지급한도로 정함.
- 이 경우 근로자에게 양도된 기성금에서 원청업체에서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을 기성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

A 회시

-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물론 설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1997.12.12. 선고, 97다5060 판결)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지급한 선급금 중 남아있는 금액이 미지급공사대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우선 반환하여야 함.
-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대판 1997.12.12. 선고 97다5060)

<판시사항>

-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은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시내용>

-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및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과 원래 선급금은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임금 68220-115, 2001.2.26.)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

Q 질의

- 1999.1.1.~2000.3.31.까지의 퇴직금 150만원(1년분 120만원+3개월분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당금 산정시 3개월분(2001.1.1~3.31)의 체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적용방법(퇴직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29세)

※ 질의당시에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이 상향조정(2001.7.1.)되기 전이었으나, 당해 질의회시집에서는 상향조정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갑설**〉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도 100만원이므로, 월정상한액과 3개월분 퇴직금 중 적은 금액인 3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을설**〉 퇴직금의 월정상한액은 365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3개월분 퇴직금에 대한 월정상한액은 246,575원(100만원×90일/365일)이므로 3개월분의 월정상한액과 퇴직금 중 적은 금액인 246,575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구 분	갑 설			을 설		
	1년분	3개월분	계	1년분	3개월분	계
체불퇴직금	1,200,000	300,000	1,500,000	1,200,000	300,000	1,500,000
월정상한액	1,000,000	1,000,000	-	1,000,000	246,575	-
체 당 금	1,000,000	300,000	1,300,000	1,000,000	246,575	1,246,575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보장하되, 근로자의 생계안정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1년분의 퇴직금)에 대한 상한액을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100~170만원으로 설정하고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함.

- 도산기업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지급보장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월간 또는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임
 - 즉, 체당금 산정시 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동 기간의 체불임금 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임금 68220-388, 2001.5.30.)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과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 여부와 그 산정방법
Q 질의

-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단체협약상 규정된 정기상여금과 퇴직으로 인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최종 3월간의 기간 동안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상여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체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이 결정된 상여금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그러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 68207-245, 2001.7.14.)

체당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

Q 질의

-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함.
-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체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함.

(임금 68207-690, 2001.10.8.)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Q 질의

- 임금채권 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7조)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에 대해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등사업폐지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대판 1996.2.23., 95다48650).
- 이와 관련하여 2001.9월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근로자의 경우 2001.4월, 9월분 임금이 체불(5~8월분은 지급)되었는데, 2001.4월분 체불임금이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설>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 즉, 2001.7~9월동안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은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을설>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므로, 2001.4월분 체불임금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구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최종 3월분의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1995.7.25., 94다54474; 1995.7.28., 94다57718; 1997.11.14., 97다32178 등)·법원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는 임금채권의 범위·기존의 행정해석(임금 68207-241, 2001.4.3.) 등을 통해 고려할 때 동 판례도 “갑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임.

(임금 68207-767, 2001.11.7.)

**회사대표가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 여부**

Q 질의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에게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 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 도산 직전 회사대표가 근로자 대표에게 체불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장내 유체동산 및 차량의 처분을 근로자 대표에게 위임(단, 근로자 대표가 유체동산을 1개월 이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둠)
 - 근로자 대표가 차량을 처분하여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 유체동산은 매각이 어렵자 사서증서 인증을 받음(체불임금 등의 변제조로 유체동산을 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를 받는 것으로 작성)
 - 이후, 동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자 근로자 대표도 이를 가압류

<갑설>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근로자들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상 대물변제한 1,000만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

<을설> 유체동산 양도계약서 작성시 회사의 부도위기로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하고 최초 위임한대로 계약 할 것을 믿고 위임하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경우 유체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체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 처분 불가능하고 임금보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A 회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물급여는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실질적 임금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임금 68230-631, 2002.8.23.)

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체당금 지급여부

Q 질의

- “갑”사(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가 도산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금융기관)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회시

- “갑”사가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위사와는 별개인 “을”사가 “갑”사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병”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시 “을”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갑”사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체불이 해소되었다면
 - “을”사가 “갑”사를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2597, 2004.7.14.)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 또는 회수 해당여부

Q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3개월 이상의 기준을 법원의 배당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체불근로자들이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의견 대립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함.

<답설> 위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표를 수령한 것은 실제 배당금액을 수령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배당금액(체당금 전액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체불금품을 기 수령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을설> 배당표를 수령했다고 하나 근로자들이 실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배당표는 출급청구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무명의 획득 절차 (예컨대 본안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절차 등)를 거친 후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채무명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2004.5.17. 행한 도산등사실인정은 적법한 조치이며,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질의사무소 의견> “을설”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즉,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가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또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바, 각 근로자의 체불임금 변제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간 중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을 배당표로 수령하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과 체당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게 되어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근로자가 배당표를 수령한 때에는 이를 ‘환가’ 또는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2762, 2004.7.27.)

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 여부

Q 질의

- 질의1) 근로자들의 미불금품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해당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채권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였을 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설**〉 동사 사업주로부터 공장건물 등 일체를 근로자대표들이 위임받았으나 공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개인간에 누구나 돈을 차용을 할 수 있으며, 비록 해당금을 전제로 차용하였더라도 사업을 폐지한 동사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체불금품이 아니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설

〈**을설**〉 동사 사업주로부터 공장건물 등 일체를 위임받은 근로자대표들이 채권단과 합의시 체불금품 지급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채권단은 연쇄부도를 우려, 주 납품업체와의 거래 지속에 따른 이득, 부채 회수를 목적으로 동사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해당금을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이미 동사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 청산방안으로 근로자들이 공장일체를 위임받은 상태이므로 미불금품은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

〈**질의사무소 의견**〉 채권단에서 근로자에게 미불금품을 차용형태로 지급하고 해당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은 부정수급 및 법 취지를 오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봄.

- 질의2)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채권단과 근로자들이 실제 체불금품보다 적게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차액 체불금품이 발생할 때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은 부합하나, 채권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및 체당금을 미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근로자들의 차액 체불금품이 발생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하고, 체당금 지급시 차액 체불금품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질의사무소 의견〉 “을설”

A 회시

- 귀 청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여 공장기계 및 건물, 제품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양도·양수가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이 경우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은 근로자(대표)와 채권단과의 금품차용 등의 거래는 민사상의 문제로 봄이 타당함.

(임금정책과-1525, 2005.4.25.)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최종 3개월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디인지 여부

〈**답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이므로 상여금도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상여금만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상여금을 체당금 상한액과 비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그 근본 취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상여금만을 체당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근로자들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임금을 전액지급받은 상태에서 상여금만 체당금액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설

〈**질의사무소 의견**〉 “을설”

A 회시

- 귀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갑설”이 타당함.

- 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단위를 산정기준기간으로 하여 그에 따라 월단위로 비례 계산된 금액을 체당금 지급대상기간의 각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임금정책과-1968, 2005.5.25.)

 법원 조정당시 포기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 본 사안은 중고등학생 입시학원 도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폐원이 되었고, 학원 강사들의 임금 상당액이 체불되었는바 강사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상황임.
- 학원의 실제경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강사들은 자력이 있는 명의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실제 경영자는 무자력자임), 청구금액 중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를 명의자가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당시 담당판사가 명의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고 해서 강사들이 일부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렇다면 강사들은 명의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회시

-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624, 2005.11.8.)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 상한액 계산방법

Q 질의

1. 질의요지

- 체당금 지급 예정 사업장인 (주)○○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산정시 “1월분 휴업수당 : 2005.1.28.~2.27., 2월분 임금 : 2004.12.28.~2005.1.23., 2월분 휴업수당 : 2005.1.24.~1.27., 3월분 임금 : 2004.11.28.~12.27.”의 경우와 같이 특정 기간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노동부 확인통지서상 계산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과 우리 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체당금 월정상한액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이 상이하여 체당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함.

2. 퇴직근로자의 임금관련 사항

- 근로자명 : 천○○(퇴직연령 36세).
- 퇴직일 : 2005.2.27.
- (주)○○의 임금지급방식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하여, 익월 15일 임금을 지급함(연봉제임).

비고	최종 1월분	최종 2월분	최종 3월분
휴업수당	2005.1.28. - 2005.2.27.	2005.1.24. - 2005.1.27.	
임금		2004.12.28. - 2005.1.23.	2004.11.28. - 2004.12.27.

3.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노동부)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께 발생한 경우 “최종 2월분 상한액”의 계산방식
 - * 기준 : 자연력에 따른 특정월(2005.1.1.~1.31.)에서 일할계산
 - 2월분 휴업수당 : 2005.01.24.~01.31., 8일/31일*1,100,000 → 283,870원
 - 2월분 임금 : 2005.01.~01.23., 23일/31일*1,550,000 → 1,150,000원
- 휴업수당 상한액 : 283,870원 : 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므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확인통지서 참조).

4.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공단)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께 발생한 “최종 2월분 상한액” 계산방식
 - * 기준 : 퇴직기준일에서 역산하여 해당월(2004.12.28.~2005.01.27.)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 : 2005.01.24.~2005.01.27., 4일/31일*1,100,000 → 141,930원
2월분 임금 : 2004.12.28.~2005.01.23., 27일/31일*1,550,000 → 1,350,000원
- 휴업수당 상한액 : 141,930원 : 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나 상한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음.

- 위 두 가지 계산방식 중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구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함.
- 여기서 최종 3월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14, 2005.11.22.)

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

Q 질의

- A 근로자는 최종 2개월분 임금 200만원(월 100만원)과 퇴직금 6년분 600만원(1년분 100만원)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200만원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

<갑설> 임금은 매월 발생이 되고,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서 발생하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 2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최종 3년분 퇴직금인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 동순위 채권이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비율인 2:3(임금200만원 : 퇴직금300만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80만원 및 퇴직금 120만원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12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병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퇴직금 6년분 중 2년분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은 임금 200만원, 퇴직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사무소 의견> “병설”

A 회시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총당순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민법」에서의 충당순서는 ①제476조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 충당”, ②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소 질의서에는 “지정변제충당” 중 「민법」 제4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변제를 받는 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위 「민법」에서의 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퇴직급여보장팀-99, 2006.1.10.)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불가시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은행계좌번호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체당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답설> 「보험급여 및 반환금등 지급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체당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고, 수령인 본인의 계좌로 펌뱅킹을 통해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구법 제10조) (수급권의 보호))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1항에 의거, 근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또한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이 가능하고, 위임수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내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또는 자국으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음. 위의 계좌입금의 방법이 모두 불가할 경우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 규정상 없으므로, 계좌를 통한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체당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것임.

<을설>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과 본인의 계좌로의 해외송금 모두 불가할 경우에도 규정에 의해 체당금 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는 하나, 「보험급여 및 반환금등지급 업무처리규정」 제4조5항에 의하면 “기금지출직원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국고금의 현금 지급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목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체당금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결정을 의뢰한 지사장이 수입인이 되어 지사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을 수령받은 후, 지사장 또는 행정복지팀장 및 이해관계자(해당 근로자, 수입 노무사 등)의 입회아래 수령확인서에 이서하게 한 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질의공단 의견〉 “을설”

A 회시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체당금의 은행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목적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귀 공단의 의견 “을”설과 같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4789, 2006.12.8.)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 퇴직 전 6개월간 계속하여 임금이 체불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고 지정하지 않은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이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받고 남은 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579, 2007.2.8.)

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Q 질의

- A회사 퇴직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 소급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전체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금만 받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청구할 경우, 기 수령한 퇴직금은 재직기간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A 회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이하 “표준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금 중 표준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부담금을 납입한 때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 다만,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과거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하 “특별부담금”이라 한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는 바,
 - 지급받은 퇴직금 중 특별부담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퇴직금 채무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330, 2009.5.27.)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Q 질의

- 1995.1.1.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9.30. 해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008.12.31.자로 복직 명령하였으나 2008.12.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때 2007.1.1.부터 2008.12.31.까지 타 회사에 취업한 기간이 있음)

A 회시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타회사 근무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087, 2009.7.15.)

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

Q 질의

- 질의1) 회사 사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금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70%를 휴업일에, 일요일은 수령액의 100%)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체당금 지급금액은
- 질의2) 1월분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하는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토요일 무급휴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
- 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사자 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함
- 회시2)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월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유급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당금상한액은 휴업수당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과 임금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을 합한 금액임.

(임금복지과-2022, 2009.9.21.)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Q 질의

- 질의1)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이 된 이후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150여명이 채권확보 및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이후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에 다시 회사가 파산될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당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회시1) 회생개시결정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채권확보 및 체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형식상 사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취업, 요양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가 소정의 입사경로를 거쳐 동일 사업장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당금지급대상이라 할 수 있음.
- 회시2)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임금복지과-2504, 2009.10.22.)

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

Q 질의

-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에 상여금 미포함)을 지급하고 정기 상여금은 휴업수당과 별개로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체불 상여금을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따라서 상여금이 최종 3월간의 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휴업기간 중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산정 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아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최저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임금복지과-247, 2010.1.14.)


체당금 조사시 반드시 대면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되지 않는 바, 동 외국인근로자가 체당금 신청 시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여부

A 회시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제22조제2항은 확인신청서 처리 중 1회 이상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다수인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근로자 일부만 직접 조사하여도 부정수급, 체불여부 등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면 근로자 전부를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동료근로자 및 사업주 조사결과, 입증자료 등 객관적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면조사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복지과-96, 2011.1.10.)

체당금 조사 방법 및 가불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 산정

Q 질의

사실관계

※ 주요사항

- ○○토건 대표이사 갑은 2011.3.31. 부도이후 질의자를 포함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2011.1월분 및 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본사 관리자 및 사무직의 임금 및 퇴직금만을 청산 한 후 폐업신고 없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한 상태이고,
- 근로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체불임금을 ‘가불금’방식으로 지급 받고 ‘체당금’을 지급받으면 갚고자 하는 상황

- 질의1) 부도만 나고 폐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업계속의 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원청에서 ‘가불금’으로 빌린 금원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 제한 사유인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귀하 등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귀하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도산등사실인정요건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직접 조사가 원칙이나, 국외 도주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현지에 출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시2)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순히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차용해 준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와 원청회사와의 민사상의 문제로 보아 체당금 지급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 형식상 차용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는 자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원청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745, 2011.5.2.)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Q 질의

-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증보험과 출국 만기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폐업으로 수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이 발생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지정변제충당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A 회시

-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1058, 2011.6.1.)

육아휴직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Q 질의

사실관계

- (질의상황) 회사는 법정관리 중 '12.7.20. 파산선고를 받음
근로자 A는 '11.11.14.부터 현재까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며, '11.9월~11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근로자 B는 '11.4.21.~'12.4.15.까지 산재요양, 이후 '12.4.16.~7.15.까지 휴직상태이나 '11.2월~4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

- 질의상의 A와 B는 최종 3개월분의 급여 미수령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상의 “A”와 “B”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지만 파산선고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퇴직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게 되면 A와 B의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589, 2012.7.31.)

명의대여계약을 통하여 경영권만 이전한 경우 해당금 지급대상 여부

Q 질의

사실관계

※ 주요사항

- 2012.2.13. A요양병원을 운영하던 기존 사업주는 폐업신고 직전 현 사업주와 명의대여계약 약정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받음
 - * 계약 주요 내용: 사업장을 현 사업주의 명의로 하되 기존 사업주가 책임 운영, 현 사업주 명의로 형성된 수입 등 자산은 기존 사업주의 재산, 양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형식에 불과, 현 사업주는 기존 사업주에게 정해진 보수를 받기로 함.
- 2012.2.15. A요양병원의 기존 사업주가 폐업신고
- 2012.2.16. 현 사업주가 사업장명을 변경하고 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영업을 개시
- 2012.3.21.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 접수
- 2012.5.10. 도산등사실인정 결정(71명, 2억 9천여만원)
- 2012.6.7. 명의대여계약사실을 알고서도 거짓 진술한 기존 사업주, 현 사업주, 신청인 근로자 등 3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각각 범죄인지
- 2012.6.12. 피의자 3명 구속영장 신청, 6.14. 판사 기각
 - ※ 현재 기존 사업주와 현 사업주는 서로 명의대여계약 위반을 내세우며 경영권을 다투고 있음.

- 기존 사업주는 명의대여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경영권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현 사업주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경영권만 이전된 경우에 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 개인 사업주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사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경영권만 이전된 경우 주식 양도 등 경영권 양도 형태, 근로조건 승계여부,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존 사업주를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장폐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간의 사례를 통하여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기존 기업을 허위로 폐지한 다음 기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업의 자산 양도 등 자금의 출처, 근로자 고용승계(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실질적인 사업운영자 여부(최종 결재권자 여부, 수익의 귀속주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위장폐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3888, 2012.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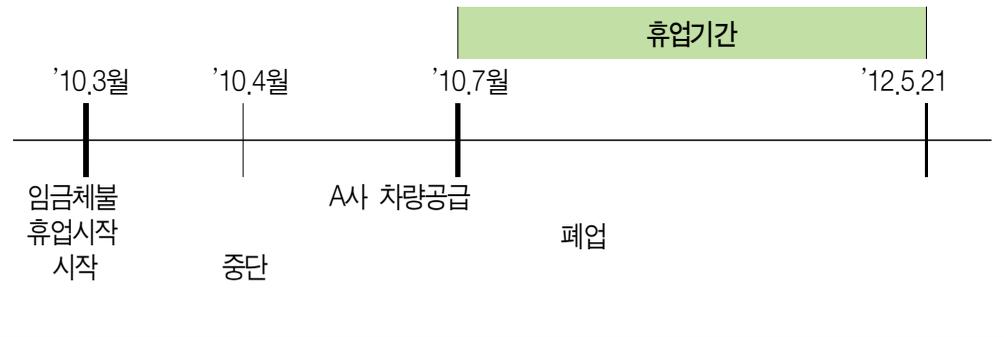
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

Q 질의

사실관계

※ 상황개요

- B사는 A사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였으나, A사가 '10.4월부터 차량공급을 중단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행하지 못하다가 '10.7월 사업주가 휴업을 결정하여 휴업진행 중 '12.5.21. 폐업함.



- 질의1)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의 기산점을 A사가 차량공급을 중단한 '10.4월로 보아야 할지, 사업주가 휴업을 개시한 '10.7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휴업중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
- 질의3) 휴업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있을 때의 휴업수당 산정 방법

A 회시

- 회시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급부가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임.
 - 귀문의 경우 A사가 차량공급을 중단하여 B사의 차량판매 영업직원이 영업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한 것은 아니며 또한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어 귀 질의의 “갑설”과 같이 휴업의 기산은 '10.7월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 질의회시: 근기68207-1714, '99.8.2.)
- 회시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B사 소속근로자들이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B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탐-5819, '07.8.7.)
- 회시3)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을 때의 휴업수당 산정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법90 다카25277, '91.6.28.)

- 다만, 체당금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의 휴업결정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휴업 원인에 대한 치유노력 및 휴업 전·후의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511, 2013.2.6.)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Q 질의

- 근로자 A, B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수급인 사업주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배당을 통해 체불금품의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 배당액을 제외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 가능한지

A 회시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체불임금 대신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체당금의 지급 범위 내(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금액에서 배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 68220-842 1998.12.16., 임금복지과 68207-685 2000.12.18.).

(근로복지과-1152, 2013.4.2.)

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금 청구가능 여부

Q 질의

-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원청업체가 지급의무가 없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A 회시

- 귀 청의 질의내용만으로 원청업체에서 대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대여금의 성질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제3자(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이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면 대위변제로 임금채불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즉, 원청업체가 임금채권에 대한 양수도 없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차용해 주고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변제의무가 있을 경우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914('10.9.6.), 근로복지과-2954('11.11.24.), 행정심판위원회 선고 사건번호 2009-20125('10.3.23.)

- 따라서 귀 청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 다만, 해당금 청구시 형식상 대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1494, 2013.4.26.)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 변경 시달)

1. 검토배경

- 희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파산선고나 사실상 도산인정으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또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퇴직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 그간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한 번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시달하였으나

* 임금 68207-69(2001.10.8.) 등 다수: <붙임1> 참조

-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

* '13.6.25. 동일사업장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 두 번 퇴직자도 요건 갖췄다면 체당금 지급(중앙 행정심판위 13-07076): <붙임2> 참조

2. 검토내용

- 그간 행정해석의 취지
 - 체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위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한번 만 지급하도록 한 것임

●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다른 도산사유로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제한 규정이 없고(내부지침으로는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
- 최초 퇴직시점이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과 두 번째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임에도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을 동일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한번만 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검토의견

-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다시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후 도산의 기초 사실이 다른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사유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한 ‘이중보호’라고 보기 어려움
- 한편, 동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파산되거나 동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후 파산되었다면 각각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동일 사업장의 동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근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함
- 따라서, 각각의 퇴직시점에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체당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근로자가 체당금 수령 후 동일 사업장에서 재입사하여 새로운 도산사실*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기간 내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 새로운 도산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 불가

- 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

(근로복지과-3075, 2013.9.5.)

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

Q 질의

- 법원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을 구분함이 없이 배당한 경우 임금채권 보장업무 처리요령에는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비율대로 배당금을 분할한 후
 - 각 분할된 배당금액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자체 내에서 어떻게 충당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는지

A 회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금품의 일부를 배당받았으나 어느 시기의 임금이나 퇴직금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 임금과 퇴직금을 비율대로 분할한 후 각각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최종 3월) 또는 퇴직금(최종 3년)을 변제한 후
 -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체당금 청구(기 질의내용의 표2,4)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076<2013.9.5.>, 퇴직급여보장팀-579<2007.2.8.>)

(근로복지과-169, 2014.1.14.)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Q 질의

-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체당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2년 8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이 있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채불임금 등의 지급)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당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570, 2012.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근로복지과-1190, 2014.4.1.)

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

Q 질의

- DB형 퇴직연금 가입(4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450만원인 경우 퇴직금 미지급액이 1,400만원인 상태에서 지급해야 할 체당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의 근속기간 7년)

A 회시

- 체당퇴직금은 최종 3년간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산출하므로 귀 질의내용 “제1안”에 따라 산정하시되
 -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이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사업주가 체당금 지급대상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를 하였다면 그 지급액은 동 기간에 지급된 퇴직급여이므로 지급해야 할 체당금은 동 금액을 제외한 체불 퇴직금에서 산정하여야 하며,
 -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체당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람
 - ※ 퇴직일로부터 최종 3년 중 퇴직급여로 지급받은 기간은 체당퇴직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므로 지급받은 기간 확인 필요.

(근로복지과-3597, 2014.9.29.)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1. 검토배경

●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체당금 산정방법은

- ①연간 미지급액을 미지급월수로 균등분할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각 월(최종 3월)의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 (이하 “제1안”) 하였으나

$$\text{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률)} = \frac{\text{연간 미지급 상여금액(률)}}{12\text{월} \times (1\text{-연간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상여금 기지급액(률) / 연간상여금 지급예정액(률)

* 임금 68207-290, 2003.4.17.

- ②연간 미지급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각 월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이하 “제2안”)됨

$$\text{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 = \frac{\text{연간 미지급 상여금액}}{12\text{월}}$$

* 임금복지과-416, 2010.4.1.

● 상기 “제2안”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이 체불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행정해석 변경 요청 질의가 있어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

2. 검토내용

●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제1안”·“제2안”을 적용하여 체당금을 산정한 경우

- “제1안”보다는 “제2안”에 따른 월 미지급 상여금액이 적고
- “제2안”의 경우는 체불기간과 기지급받은 기간이 중복(분모 12월에 모두 포함) 되는 모순이 발생

예시)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인 사업장에서 3월까지 100만원을 받고, 4,5,6월이 체불된 상태에서 6월말에 퇴직했을 경우

- “제1안”을 적용하여 월 미지급 상여금액을 산정하면 월 333천원임(통상 4,5,6월에 받아야 할 상여금 100만원과 동일함)
- 반면, “제2안”을 적용하면 월 250천원으로 83천원만큼이 적음 (3개월 기준 250천원이 적음)

※ 기 지급받은 기간에 추가로 미지급 상여금액이 배분되어 월 평균 상여금액이 적어짐

- 또한 상여금은 매월 순차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미지급된 월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임
- 검토의견
 - “제1안”을 적용하면 체당금 산정이 복잡하니 현행 적용되고 있는 “제2안”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은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성 때문에 체불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단순히 업무 편의성으로 인해 체불근로자의 체당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최근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 강화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미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월의 임금을 계산 후 체당금을 산정하는 의견(“제1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가지고 1년 중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균등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제1안”)
 - * 법정변제가 아닌 지정변제인 경우에는 별도 적용
- 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시행일 이후 체당금 산정시부터 적용).

< 유의사항 >

- ① 상여금 체불액에 대한 체당금은 임금 체불액과 합산하여 임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산정.
- ② 상여금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과 상여금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
- ③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상여금이 전체 미지급 상여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미지급 상여금을 한도로 체당금을 산정

(근로복지과-3949, 2014.10.23.)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

Q 질의

사실관계

- 근로자 40명이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패소 하였으나, 이 중 1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확정됨
- 이에 대해, 해당 고용노동청은 소송 제기 1명에게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당사자 외 39명에 대해서는 소 제기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해당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근로자 40명 전체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인지

A 회시

-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이 확장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 39명의 체당금 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이 체당금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등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스스로 철회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2, 2015.8.27.)

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방법

Q 질의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A 회시

- 귀하가 제출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가입 이후 최초 1년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2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체당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체당금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체당금 산정 예시〉

재직기간	임금 총액(a)	퇴직연금 부담금 (b=a/12)	퇴직연금 납입금액	체당금 산정대상 퇴직금
2014년	3천만원	250만원	미납	250만원+지연이자
2013년	2천4백만원	200만원	미납	200만원+지연이자
2012년	2천4백만원	200만원	200만원	해당없음

- 이때,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계산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01, 2015.8.27.)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업무 대리 범위

Q 질의

- (상황)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권한행사를 위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고소 제기
 - 근로자 대표는 체당금 일체 권한을 공인노무사에게 위임
 - 체당금 청구에 대해 불인정 통지
- (질의) 위임받은 공인노무사의 체당금 불인정 통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 대리인 자격 여부

A 회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에게 부여한 권한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며,
 - 만약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 부여한 권한 범위와 근로자 대표가 공인노무사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가 모두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라면 체당금 불인정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의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53, 2015.10.7.)

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

Q 질의

- (상황)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받은 도급금액 및 퇴직연금 해지금을 지급받아 사장과 근로자대표가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
 - 도급금액은 체불임금(2015.2월 일부임금, 3월 임금) 중 2월 체불임금 전액과 3월 체불임금 중 일부에 변제충당
 - 퇴직연금 해지금은 최근 3년 이후의 퇴직금과 최근 3년이내의 퇴직금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변제충당
- (질의)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받은 도급금액 및 퇴직연금의 변제충당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A 회시

- 사업주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어느 체불임금에 변제충당해야 하는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지 않아 「민법」에 따라 변제충당처리를 해야 합니다.
- 체불된 임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은 「민법」 제476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한 체불임금에 대해 변제에 충당하고,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당시 체불임금을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것처럼 사업주가 변제당시 지정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맞으며, 변제당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변제에 충당한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00, 2015.11.11.)

부당이득 환수방법

Q 질의

- (상황)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거래처 채권을 양도하고 폐업, 이후 근로자들이 거래처에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음
 - 근로자들이 진정, 도산 및 체당금 신청 등을 위임한 신청인이 거짓진술로 채권 양도사실을 숨기고 거래처에서 받은 임금을 체불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청구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과다 지급
 - 사업주와 신청인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으로 범죄인지
- (질의) 신청인 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추가징수방법

A 회시

- 근로자로부터 신고사건의 진술, 도산 및 체당금 신청 등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근로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청인이 행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한 근로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 이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은,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지급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추가징수액은 환수할 금액임
 - * (예시) 체불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거래처 채권을 양도받아 체불임금 중 일부인 50만원을 받고 체당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 50만원, 추가징수액 50만원

● 다만, 귀 청에서 질의한 사안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근로자들의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착오, 고의 등으로 이러한 사실을 신고사건 조사과정이나 체당금 청구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에 따라 환수해야 할 금액은, 잘못 지급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임

* (예시) 체불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거래처 채권을 양도받아 체불임금 중 일부인 50만원을 받고 체당금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 →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액 50만원.

(퇴직연금복지과-4030, 2015.11.19.)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Q 질의

-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A 회시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질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체당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4138, 2015.11.25.)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 사업장이 다른 경우
Q 질의

- (상황) A사업장의 재판상 도산으로 A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67명은 체당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진정사건 처리시, 신청인 중 2인을 B사업장 소속으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질의) 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신고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 소속으로 본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A 회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때, 체불사업주, 체불금액 등의 확인은 통상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신고사건 처리 결과와 다른 사업장 소속임을 주장하며 체당금 확인신청을 제출하였다면,
 - 체당금 확인 신청이 반드시 신고사건 결과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체당금 지급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93, 2015.11.30.)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Q 질의

- 근로자 8명이 고용된 주식회사 ○○에 대해 2015.9.30.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여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은 압류된 상황에서,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처와 딸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 처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A 회시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질의한 법인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당해 법인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93, 2016.1.7.)

사업주 사망 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Q 질의

- 개인사업주의 사망으로 체불근로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A 회시

-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판결 등을 지급사유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한 것임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피상속인의 임금지급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 사업주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확보한 집행권원도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 인정된다고 사료됨
- 아울러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305, 2016.4.5.)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Q 질의

- 사업주가 일부직원(관리직)들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임의 또는 대신 납부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납부
 - 체불 퇴직금에 대한 해당금을 산정할 경우에 법인이 기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상계처리하고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시

-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관리직원들에게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임의 납부하였다면,
 -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호혜적으로 지급한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4634, 2016.12.8.)


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
Q 질의

- “입사 후 퇴직 이전까지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있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로서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범위와 관련된 사항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체당금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되는지를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은 관련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및 제477조(법정변제충당)가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가 특정 월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따라 특정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주가 특정 월을 미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민법」 제476조 및 제477조에 따라 변제 처리한 이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며, 변제 처리 이후 남아있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957, 2017.2.27.)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Q 질의

-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체당금 지급

A 회시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말 퇴직한 근로자

(1) 2016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5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 사용기간(2016.1.1.~2016.12.31.)이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①에 해당

- ①중에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2016.12.1.~12.3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함으로써 수당이 발생한 기간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
- (2) 2017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6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일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②에 해당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7.6.)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

Q 질의

-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에 대해 해당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한정승인의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A 회시

-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로,
 -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시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체당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과 채권자들 간의 문제이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체당금 채권에 대해 체당금 지급청구를 신청한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
-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효과를 가지므로,
 - 사망한 근로자(피상속인)의 체당금 채권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체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퇴직연금복지과-2913, 2016.8.12.)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
Q 질의**사실관계****<주요 상황>**

- (주)○○은 2017.3.15.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었고, 일반체당금이 2017.4.28. 근로자 22명에게 117백만원이 지급(소액체당금 62명에게 173백만원 지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요건은 충족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체와 관계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은 자’이므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해당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한 자’이므로 체당금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등 제3자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각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여부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 부정수급한 체당금에 대한 통상적인 반환요구의 범위는 ①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거나 체당금 사실확인이 취소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금액 전부이며, ② 미지급 임금을 부풀리거나, 근로기간을 늘려 퇴직금을 부풀리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중 부정금액만 해당되며, 사용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반환요구의 범위는 동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6, 2018.2.1.)



제 4 장

소액체당금

제 4 장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Q 질의

-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

A 회시

-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주의 기준을 정한 것은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 또한,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격을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을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의미로,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사업활동의 기산점은 사업자등록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고 이후 사업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99, 2015.11.11.)

사업장 양도·양수 시 소액채당금 지급 요건

Q 질의

-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3.16. 도산등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채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7.1.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채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채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시

-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개인업체 B에게 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2015.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채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2015.7.1. 이후에 확정된 판결 등을 받는다면 소액채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4137, 2015.11.25.)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중복 지급

Q 질의

-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준 문제(「임채법」 제7조제3항 후단 해석 문제)

A 회시

-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은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 중 일반체당금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 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반체당금 대상임에도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한정하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이 가능

- ② 위 ①번의 경우에 지급해야 할 소액채당금의 범위는
 - 근로자가 일반채당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되, 소액채당금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11.30.)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채당금 사업주요건
Q 질의

- 「임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는 소액채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요건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가동중’인 사업장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A 회시

- 사업장이 가동중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11.30.)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 시 소액채당금 지급 문제

Q 질의

- ①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이상 퇴사 시 각 퇴사 시점에 소액채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소액채당금 지급사유로 판단하여 각각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액채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각각 소액채당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각 퇴사 시점 체불액에 대해 새로운 지급사유인 판결문을 각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① 소액채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채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이상 퇴사하여 일반채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채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중에 소액채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액채당금으로 지급이 가능함
- ②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여 각각의 퇴사시점마다 소액채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함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11.30.)

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채당금

Q 질의

- 근로자 갑이 A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3~4개월 단위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중간에 다른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도 근로하던 중, A사업장의 파산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채당금 계산방법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3.6월 임금 2,600,000원 체불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4.2월 임금 1,064,270원 체불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4.3월 임금 3,105,000원 체불

A 회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갑이 A사업장의 공사현장 ㉠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3.6월 임금 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A사업장의 또 다른 공사현장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2014.2월 임금 1,064,270원 및 2014.3월 임금 3,105,000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 갑이 근무한 A사업장의 ㉠와 ㉡ 공사현장마다 각각 소액채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와 ㉡ 각각의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중 최종3개월분 임금에 대해 각각 300만원 한도로 소액채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액채당금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94, 2016.1.7.)

소액채당금 관련 소제기일

Q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채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일’과 관련된 사항

A 회시

- 질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재직 중에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채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채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제기일’은 ‘채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16, 2017.5.1.)

소액채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Q 질의

- ‘채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해석’에 관한 것으로 소액채당금 청구기간과 관련된 사항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채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확정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다만, 소액채당금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소액채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시’로 해석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초과되어 채불근로자가 채당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등이 확정됨으로써 소액채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초의 날로,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17, 2017.5.1.)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채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Q 질의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A 회시

- 소액채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채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채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8, 2018.2.5.)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Q 질의

- 질의1) 현재 (주)○○○건설 및 근로자들 57명 건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서울○○경찰서에서는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바, 동 건이 부정 수급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경찰서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질의2) 서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주)○○○건설 및 근로자 57명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조사 없이 동 수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 체당금 반환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 질의3) 체당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결정을 한 고용지청에서 체당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통장내역, 근로자 확인서 등을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동 건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경인지사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한 것인바,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신청과 지급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을 조사해야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여부

A 회시

- 회신1) 다른 수사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납부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 회신2)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별도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처분(소액채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 회신3) 소액채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55, 2018.1.29.)

소액채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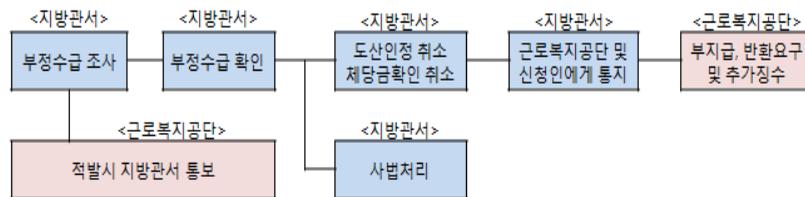
1. 지침 마련 배경

- 채당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규정, 지침은 일반채당금 위주로 되어 있어, 소액채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 미비
- 소액채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요구, 추가징수, 사법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2. 일반채당금 부정수급 처리 절차

- 일반채당금은 지방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 및 채당금 사실확인을 통해 채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업무를 처리
 - * 도산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2014.8.1. 예규 제77호) 제25조
- 지방관서는 부정수급 조사와 사법처리, 도산인정 취소, 사실확인 취소, 사실확인 변경을 공단에 통지
- 공단은 지방관서의 통지에 따라 채당금을 부지급하거나 지급한 채당금에 대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일반채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절차>



3. 소액채당금 부정수급 처리 절차

- 소액채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관서는 일반채당금과는 다르게 지급요건을 확인하지 않음
 -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법원의 판결문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소액채당금 지급 요건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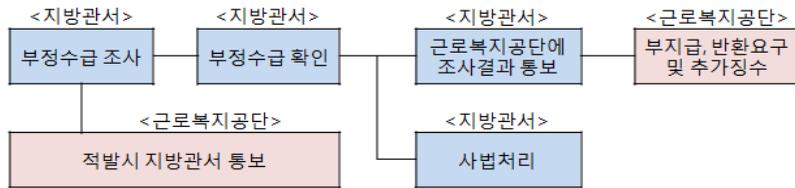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

○ 다만, 부정수급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행위로 사법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체당금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 (지방관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행위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절차>



4. 기관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소관 업무

□ 지방고용노동관서 소관 업무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진행

* 부정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는 부정수급자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한 관서에서 처리

- 부정수급자 외의 제3자 및 사업주(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을 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에서 처리

- 지방관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

- 부정수급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지 및 사건송치

○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근로복지공단 소관 업무

- 소액채당금 부정수급 적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수사 의뢰
 -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관서
- 지방관서에서 통보한 수사 결과를 참조하여 채당금 부지급, 반환명령 및 배액징수
 - *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착오지급 등)은 공단 자체 조사 후 처리

5. 기타 및 행정 사항

- 일반채당금 부정수급 및 기타 업무처리 절차는 「실무지침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여 검찰에서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별도 조사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수사 결과 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통보된 수사 결과에 따라 채당금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조치
- (지방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발급 철저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재오류가 없도록 신고사건 처리단계에서 기재사항 부분을 철저히 조사
 - * 대다수 판결문은 체불금품 총액만 기재할 뿐 퇴직일, 근무기간, 체불상세내역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어 소액채당금을 청구할 때 지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 관계가 명백히 상이한 경우* 공단 자체적인 판단 가능
 - * 공단 자체적으로 판결문, 자체 전산시스템, 기타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
 - 판결문, 보유정보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



제 5 장

부담금의 징수

제 5 장 부담금의 징수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됨.
-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임금 68220-239, 1999.3.24.)

항만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항운노동조합에 인력을 요청하여 배정받아 사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항만하역회사에서 부담금을 신고·납부시 소속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의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하역업체의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임금 68207-289, 1999.4.8.)

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Q 질의

- A사는 1998.10.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일로부터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업무를 보조하는 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일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은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 법원의 승인하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근로자)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파산법」인 A사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구법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 당해 사업주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동 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경우 접수된 신청서는 반려조치하나
 -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다시 근로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던 중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즉,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다른 사유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가능함.

(임금 68207-429, 1999.6.7.)

〈 관련 판례 〉

<판시사항>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내용>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법」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파산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제41조, 제42조) 체불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는 있으나,
 -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계속되는 사업활동이 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 영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 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가 있는 후에도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 원고로서는 여전히 「임금채권 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판 2001.2.23., 2000두2723)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 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Q 질의

- 회사에서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경감 가능 여부

A 회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 제10조(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퇴직 적립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임금 68207-314, 2000.4.14.)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

Q 질의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비율의 산정방식은

A 회시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중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 경감액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임.

(임금 68207-83, 2002.2.5.)

회사 결산일(9월말)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Q 질의

- 회사 결산기준일(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부 근로자는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 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제2호(구법 제9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즉,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퇴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보험 가입으로 발생하는 해당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 따라서 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예컨대 9월 말일)에는 동 결산기준일 시점에서는 퇴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12월 말일 기준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보험 등에 미리 가입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년도 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472, 2003.6.20.)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징수여부

Q 질의

- 주식회사의 임원 중 출자(주주) 임원은 임금채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임금채권보장금을 징수(개산, 확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여부
※ 참고사항: 5명이 출자하여 법인설립 → 1인 20%씩 지분보유(등기이사 및 감사)

A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왕에 납입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람.

(임금정책과-2088, 2005.6.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Q 질의

- 「임금채권보장법」(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 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 및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 또한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 회시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법 적용 제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할 사안임.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3.10.)

이 책을 만든 사람들



노동정책실장	안경덕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퇴직연금복지과	과장 곽희경
	사무관 장순남
	주무관 박형서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1998. 7 - 2018. 3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4

인쇄 : 열림기획(주)

044)868-5055

[비매품]